

+ 입법정보

세종의회소식

세종 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회

2019

통권 제23호

SEJONG CITY COUNCIL



의정 포커스

제57회 임시회 성과

인터뷰

차성호 의원
노종용 의원
손인수 의원

의정뉴스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조치 촉구 성명서 발표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제57회 임시회 개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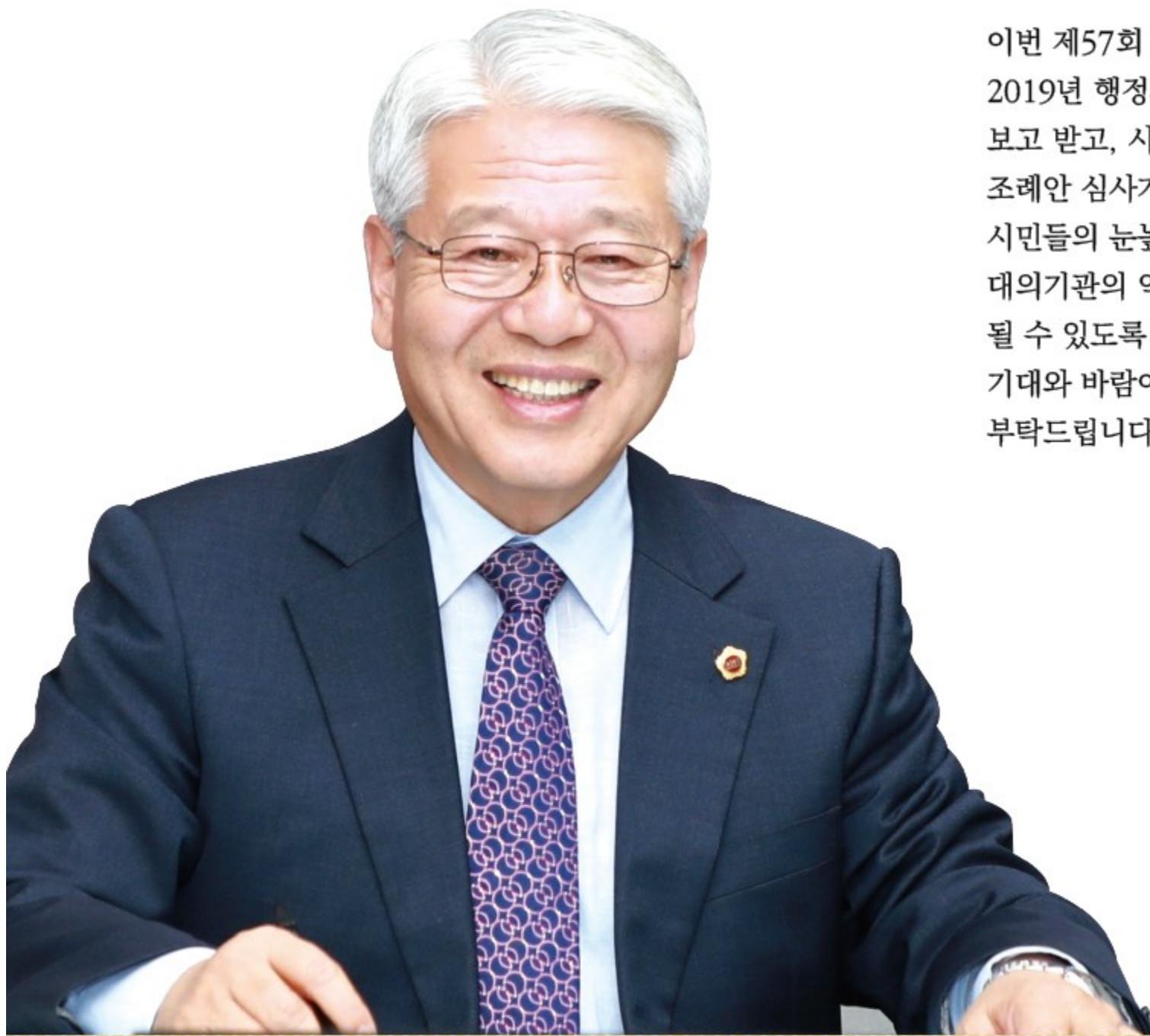
SEJONG CITY COUNCIL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두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여름내 지속된 무더위에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성장과 발전,
시민들의 복리 증진 향상을 위해 구슬땀을 흘린
동료 의원님들은 물론,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57회 임시회에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을
보고 받고, 시민들을 위한 각종
조례안 심사가 이뤄집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통해
대의기관의 역할에 충실한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매순간 시민들이 원하는
기대와 바람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국회사무처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국회 분원 이전 시나리오 가운데,
서울에 소관부처가 있는 상임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정책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안이 출장과 행정비용 등을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정치적 합의와
개헌, 국회법 개정안 등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준비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시 집행부는
행정수도의 핵심 요소인 국회 분원이
세종시에 들어설 수 있도록 정치력과 행정력 등
역량과 의지를 결집시켜 관련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는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따른
시 차원의 대응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 여론에 따라
일본 전범기업과의 계약 제한 조례안과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을 추진하고
일본 경제 보복 조치 철회와 공식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보다 강력한 후속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으로 선량한 시민들,
특별히 중소기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산업 현장의 고충과 우려 사항들을
세심히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실제 피해 사례가
발생한다면 시 차원에서 세제 지원책 등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얼마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으로
중앙부처 18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세종시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국회 분원 설치가 가시화된 만큼
본격적인 행정수도 시대를 향해
더욱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갑시다.

15일간의 제5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을 통해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태풍으로 인한 수해 가능성에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재난예방 대응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준태



CONTENTS

세종의회소식 통권 제23호



- 4 **의정 포커스**
제57회 임시회 성과
- 6 **의원 인터뷰**
차성호 의원
노종용 의원
손인수 의원
- 12 **의정 뉴스**
국회 세종의시당 용역결과 후속조치 촉구 성명서 발표 외
- 26 **의정단 기고**
실패를 교훈 삼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재도전해야
'세종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시급하다
- 28 **5분 자유발언**
- 38 **긴급현안질문**
- 39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활동**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 49 **시민기획 캠페인**
베리어프리 장애인화장실 벽을 낮추다-2
- 50 **주요안건 처리현황 - 제57회 임시회**
- 55 **입법정보**
- 85 **독자투고**
세종시민은 '어른다운 시민'이 되자
- 86 **세종시티투어**
가을 정취, 그 한가운데 서다
- 88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 90 **포토에세이**

제57회 임시회 성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56회 정례회 이후 2달여 만에 제57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제57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청취와 제2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그리고 46건에 달하는 조례안 심사 등이 이뤄졌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일본 경제보복 조치를 강력 규탄하며 선도적으로 소재·부품산업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주목을 받았다.



세종시 소재·부품산업 진흥 조례 마련

우리 정부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 연이은 경제 보복 조치로 지난 8월 5일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은 일본 수입에 의존해왔던 핵심 소재·부품·장비들을 국산화해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세종시의회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소재·부품 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부품산업육성위원회(위원장 시장) 심의를 거쳐 관내 소재·부품 관련 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 할 수 있게 됐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

한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은 제안 이유에 대해 “우리시 소재·부품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위해 소재·부품 산업의 안정적 공급 역량 확보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복지 분야 집중

제57회 임시회에서는 제2회 세종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 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243억원에서 647억원 증액된 1조 6,890억원으로 확정됐다. 제2회 추경안은



정부 추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사업, 지역 균형 개발과 경제 활성화, 서민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실제로 예결위는 추경안 계수 조정을 통해 운영지원과 소관 본관 청사 관리 등 16개 사업에서 8억 6,320만원을 삭감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모두의 놀이터 조성사업 실시 설계비 등 32개 사업에 삭감 전액을 편성했다. 이태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경안을 계획대로 집행해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시 집행부에 당부했다.

세종시 지역화폐 조례안 처리



세종시의회는 제57회 임시 회 회기 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세종시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는 정책 발행 48억원과 일반 발행 22억원 등 총 70억원 규모로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화폐의 발행

과 유통 목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득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태환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지역 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득 증대 및 활성화를 위해 (가칭)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지역화폐의 공식 명칭은 공모전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 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자체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77곳에 달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개정 촉구 결의

세종시의회는 제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세종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심사규칙이 제정된 2004년부터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방교육자치단체 예산은 2.2배 증가하고 물가 상승률은 37%에 달하는 등 제반 여건 변화에도 중앙투자심사 기준 액이 100억원으로 묶여 있어 지방교육자치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상병현 교육안전위원장은 “중앙투자심사 대상 기준금액을 1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해 지방교육자치 발전에 동참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제 역할에 충실한 민의의 대변자 되겠다”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은 지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링 결과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그는 산업건설위원장을 역임하며 탁월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초선 의원의 한계를 규정하지 않고 세종시의 더 나은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제3대 세종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
과거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당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매월 한 차례 정도 당정협의회를 진행하게 되면서 당시 의원들과도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었다. 당직을 맡게 되면서 지역 민들과 함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다 보니 지역 현안과 밀접한

지역민들의 고충을 많이 접할 수밖에 없었다.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전 경험했던 사무처장의 경험들이 현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큰 자산이 되고 있다.

Q 세종시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먼저 세종시는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도농복합도시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읍·면 지역이 동 지역과 함께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촌 지역의 발전상을 그려왔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농민들과 끊임없이 논의하면서 여러 대책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농촌 지역의 발전 방안들을 모색해왔다. 농업은 자족도시로 성

장해야 하는 세종시의 미래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지역 균형 발전의 해결 과제로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조기 정비와 도시재생프로젝트 등 사업 추진을 가속화해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확대 시행과 복합커뮤니티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해나가겠다. 또한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우선적으로 2020년 6월 30일로 일몰제에 처해지는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읍·면 지역에 예정된 도시계획도로를 차질 없이 완성해서 시민들을 위한 기반 시설들이 잘 갖춰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읍·면 지역 인프라는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Q 제3대 세종시의회 상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간 성과는?

의원에 당선 된 이후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늘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 먼저 세종시의회에 아낌없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3대 세종시의회동료 의원들의 배려 덕분에 초선인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을 수 있었다. 그간 라돈 노출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면지역 급수시설에 대한 지적과 자족도시에 꼭 필요한 국가산업단지 유치, 그리고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와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연기 조치원비행장 이전 등 크고 작은 현안들이 끊임없이 발생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장군면에서 파리 폐 사건이 발생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봤다. 장군면 파리 폐 사건으로 관련 부서의 소극적 초기 대응과 전문 교육이나 인력 없이 안전사고에 노출된 민간 자원봉사자들, 원인 규명과 불법 행위자 처분에 대한 늑장 대응 등 적잖은 문제가 드러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가 긴급방제활동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이러한 지역 현안들을 접할 때마다 산건위 위원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시민들과 소통하고 문제점을 찾는 데 주력했다. 앞으로도 산건위는 잘못된 점은 시민 의견을 수렴해 고쳐나가고 미흡한 점들은 보완하여 세종시의 밝은 미래를 그려나가겠다.

Q 지금까지 고수해오고 있는 의정철학은?

산건위 소관 업무를 보면 건설·교통·기업·환경·농축산·상하수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활한 상임위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들과 늘 함께 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겸손하고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할 때는 확고함으로 외유내강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Q 예산안을 심사할 때 주안점을 둔 부분은?

2018년 7월 개원 이후 현재까지 정례회 2회와 임시회 5회 총 7회에 걸쳐 149일간의 의사일정이 있었다. 그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모성, 전시성, 행사성 예산은 최소화하고 민생과 직결된 주민 숙원사업에 예산을 효과적이고 균형 있게 편성하려고 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세종시의 지속적인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 경제 활성화,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 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면서 동료 의원들과 합심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해나가겠다.

Q 앞으로 활동 계획은?

앞으로 세종시의회 의원이자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세종시의 발전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선두도시이자 지방자치분권의 상징도시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더 확충해야 한다. 스마트시티 지정과 연계해 스마트국가산업단지를 발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도 다하겠다. 국가산단이 들어와서 첨단 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첨단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게 맞다고 본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답게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세종시를 만들고 싶다. 지역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 더불어 대내외적으로 세종시를 알릴 수 있는 세종시만의 랜드마크도 구축하고 싶다.

Q 시민들에게 한 말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해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물론, 지방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행태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양지해주시고, 끊임없이 지켜봐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지역의 일꾼으로 거듭나겠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근본적 역할에 충실히 하면서 초심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





“국제도시 품격에 맞는 세종시 건설 추구”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도 이른 바 ‘만들어가는 도시’다.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은 각종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보다 넓은 안목으로 ‘국제도시 조성’이라는 청사진을 그려왔다. 노 의원은 시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국제도시 품격에 맞는 내실 있는 발전과 특색 있는 도시 구축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주목 받고 있다. 과거 다양한 인생 경험을 통해 창업가 기질과 국제적 안목을 겸비한 그를 만나 의정철학과 비전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제3대 세종시의회 의원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으로 촛불 혁명이 일어났다. 당시 촛불 혁명은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과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의 발로였다. 당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꿔야 한다’는 뜨거운 마음으로 촛불집회부터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문재인후보 조직본부 조직특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세상을 바꿨다고 믿는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세종시의 성장과 변화에 직접 뛰어들게 됐다.

Q 세종시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여러 현안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상권 활성화가 시급해 보인다. 이는 세종시의 도시 자생력 즉,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다. 최근 일부 소상공인들과 함께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지역 축제 등 의미 깊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의 일환으로 지난 제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때 상가 밀집지역에 건물번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건물 외벽 상단 및 주차장 입구에 눈에 잘 띄도록 건물번호를 부착하는 것이다. 상가마다 차별성을 부여하고 세종시 상가 특유의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시민들은 건물을 식별하기에 유용하고 위급 상황 시 신속하게 현재 위치를 파악해 알릴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제3대 세종시의회 임기 중 세종시민들의 염원인 행정수도 완성을 꼭 이루고 싶다. 의정활동을 하기 전에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 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았을 정도로 행정수도 세종시대를 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앞으로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 제3대 세종시의회 상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간 성과는?

제56회 정례회 때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포된 조례 오류를 지적해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게 한 것을 대표 성과로 꼽고 싶다. 당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출범 이후 공포된 조례 1,090건 중 321건에서 내용 누락과 임의 수정 등 오류가 발견됐다. 심각한 문제는 추가 조사 때마다 공포된 조례 오류 사례가 각기 다르게 집계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사후 검토나 문제 대처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현재 상당 부분 공포된 조례 오류가 개선되었지만, 전문 인력 확충과 검토 프로그램 도입 등에서 아쉬운 측면도 없지 않다. 앞으로도 시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용과 다르게 공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Q 현재 시민들을 위해 발의할 예정인 조례가 있다면?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개념이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정부 보조를 받아 서비스 인력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형태여서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내년부터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사회 참여가 장려될 수 있도록 이번에

의원 전원 발의 형태로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또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문화 다양성 조례 제정을 발의할 계획이다. 종교와 장애, 국적, 언어, 성별을 초월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도시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바람을 조례에 담았다.

Q 지금까지 고수해오고 있는 의정철학은?

많은 사람들이 ‘초심을 잃지 말자’는 말을 신념처럼 간직하며 살아간다. 그만큼 초심을 지키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은 일생을 관통하는 최대 과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조례 제정과 예산 심사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의정활동을 사사롭지 않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세종시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의정철학을 기반으로 세종시의 발전과 공약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Q 앞으로 활동 계획은?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오래한 경험을 토대로 외국인 유학생과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와 소프트웨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행정복지위원회의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공무국외출장’ 당시 현지 한류 팬들의 한국어 교육 수요가 기대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세종정신을 계승한 도시인만큼 세종시가 특화된 한국어 교육전문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선보인다면 해외 유학생 유치는 물론, 도시 브랜드 인지도 상승으로 관광 효과 또한 상당할 것이다. 앞으로도 해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다양한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상가 활성화 방안과 청년 창업 장려 방안들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나가고 싶다.

Q 시민들에게 한 말씀.

아직 한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많은 의원으로서 어깨가 무겁다. 조례 검토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입에 단내가 날 만큼 많은 사람들과 논의하고 더 나은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다. 향후 정례회와 임시회 등을 통해 숙고한 내용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펼쳐 보일 계획이다. 앞으로도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더 힘을 내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응원과 격려를 부탁하고 싶다. 물론, 맹목적 비난보다는 대안 있는 건전한 비판 역시 의원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과 공감 의정 펼치겠다”

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

최근 지방 정가에서는 젊은 정치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은 도전과 열정의 청년정신을 기반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외유내강 리더십’으로 세종시민들을 위해 겸손하면서도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손인수 의원을 만났다.

Q 2019년도 한해 의정활동을 되돌아본다면?

2018년 6월에 제3대 세종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정말 빠르게 시간이 흘러간 것 같다. 임시회와 정례회 준비, 그리고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다 보니 어느 덧 올해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우리 시는 광역과 기초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이다. 정책기획과 사업집행을 동시에 심의할 수 있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의회에서 심의된 예산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살펴보고 있다.

Q 개원 이후 지금까지 세종시의회 의원으로서 가장 중점을 둔 정치철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내 의견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의견 또한 존중해야 한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대방 의견에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는 유연성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다만, 스스로 확고하게 지켜야 하는 원칙도 세웠다.

첫째, 합리적인 의견은 수용하는 민주적인 자세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열려 있는 마음

셋째, 공직자로서 의무를 다하는 책임지는 행동

Q 세종시의 당면 현안은 무엇이며 해결 과제는?

내부적으로는 읍면동 마을공동체 간 유대감 형성, 지역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상가공실률, 자족기능 강화로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상인조직 설립을 지원해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나가야 한다. 높은 상가 공실률과 상가 거래 감소는 우리 시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기업과 문화시설, 공공기관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기존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들과 소통하여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한다.

외부적으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충청권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발휘하려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이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충청권과 공조를 강화해 공약 이행을 요청해야 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토대를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최근 들어 충청권이 인구유출이나 혁신도시 지정, KTX역 신설, 택시 운행권역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004년 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 당시 충청권이 한 목소리로 요구해 세종시가 만들어 질 수 있었다. 우리 시와 의회, 시민단체가 충청권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Q 제3대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은?

3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 4개월이 되었다. 의회가 평가받기에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임기 절반이 지나는 2년이나 마무리되는 4년이 될 때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Q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산업건설회 위원으로 심의한 사업들이 실제 개선되는 성과가 있기 까지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 이번 정례회에서 수돗물 활성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다. 세종시에서 수돗물 음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겠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부족한 제게 세종시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성원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해드리는 길은 신뢰할 수 있는 시의원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시의회
의정뉴스



세종시의회, 제57회 임시회 폐회

15일간 회기 종료...추경안 및 조례안 등 73건 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9월 1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와 제2회 세종시 추 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동의안 등 7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회운영위원회 1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행정복지위원회 32건,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산업 건설위원회 23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교육 안전위원회 14건,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 등이다.

또한 박성수·채평석·안찬영·김원식·이태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으며, 차성호 의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방안과 긴급방재 대응체계 문제점과 재발방지 마련 촉구'를 주제로 긴급현안 질문을 실시했다.

본회의 종료 후에는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행정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 이행을 위한 퍼포먼스도 이어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는 2019년 청소년 의회 교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름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본회의를 방청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조치 촉구 성명서 발표

국회사무처 제시한 대안 범위에서 조속한 건립계획 확정 촉구



세종시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정준이, 이하 지방분권세종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 이하 행정수도특위)는 8월 22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확정하고 설계 용역 등의 후속조치를 국회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분권세종회의와 행정수도특위는 “국회는 연구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대안 중 B1~B3안의 범위에서 이전규모와 시기를 결정하여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 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부처와 관련된 상임 위원회를 비롯해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가 이전하는 용역 결과에 따른 설계비 등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들은 이전 규모와 함께 이전 시기도 명확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윤형권 행정수도특위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입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후속조치를 연내에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설치가 서울과 세종의 정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20대 국회가 마지막 임기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6월 이해찬 의원이 국회분원 설치를 명문화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8월 13일 국회사무처는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세종시의회, 일본 경제 보복 조치 규탄 결의대회 개최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 강력 규탄… 日제품 불매운동 등 강경 대응키로
서금택 의장 “결의대회를 계기로 들불처럼 극일의 의지가 확산되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8월 6일 본회의장에서 일본 경제 보복 조치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8월 2일 일본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에 강경 대응하기로 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일본 정부에 경제 보복 조치 철회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보상 등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일본 정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외교적 협상 의지는 물론, 국민 여론과 정서를 무시한 경제도발이자 자유경제 시장 질서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세종시의회가 발표한 규탄 결의문에는 ▲일본 아베 정부에 우리나라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을 요구한다 ▲공공물품 구매 시 일본 제품을 배척하고 국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국내 기술의 진흥을

유도하고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강경 대응한다 ▲일본 경제 보복의 만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 흔들리지 않는 각오와 투쟁으로 선전 사업을 적극 전개한다 ▲일본 정부의 불법적 조치로 인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종시의 산업전반을 살피고 조치한다 ▲일본 정부의 사과와 철회가 있기 전까지 일본 여행 자제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세종시민과 함께 가열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1965년 한일 수교 이래 일본이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우방국 또는 우호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조치"라며 "일제 강점기 역사 청산과 더불어 우리 핵심 산업이 일본을 넘어서는 중대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日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규탄 성명서 발표

추가 경제 보복 조치 즉각 철회 촉구…

일본 제품 등 불매운동 전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8월 2일 일본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 제품과 여행 상품 불매운동’ 전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이 우리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경제 보복 조치를 강행했다”며 “자유경제 시장 질서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한일갈등의 원인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규정했다. 세종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연이은 경제 보복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간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일본 여행 상품과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전 시민들과 단결해 전개함으로써 이번 한일갈등

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정부에 조속한 대응책 강구를 주문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발전적인 한일관계 개선방안 모색도 당부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 정부의 대일관계 기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역시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 철회 등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지키고 상호 호혜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불매운동 철회 등 한일관계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등 ‘일본 보이콧’ 선언이 공공 영역에도 확산됨에 따라 향후 일본 아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시의회 '세종보 해체' 입장문 발표…일정 기간 결정 유보 표명

서금택 의장 "환경 영향 분석과 경제효과 등 면밀히 분석 후 결정내려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7월 15일 '세종보 해체 방침'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금택 의장은 입장문에서 "세종보 존치와 해체라는 찬반 양론이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여러 방안들을 놓고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장은 세종보의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다각적인 재검토를 주장했다. 서 의장은 "세종보의 64%가 가동보 구간으로 되어 있어 수위와 유량을 조절하는 데 용이하다"며 "여름에는 보를 개방해 수질과 생태계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겨울에는 물을 가둬 친수공간으로 활용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다른 4대강 보와 달리 세종보는 참여정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 및 개발계획에 따라 친수공간 확보, 수량과 수질 유지 차원에서 건립되었다는 주장과도 맥을 같 이 한다.

특히 서 의장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세종보에 추가 비용을 들여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존치가 더 나은지 고민해보고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시민 여론을 고려해 일정 기간 결정을 유보하는 것이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는 공익적인 판단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서 의장은 정부 방침에 대해 '전면 반대'가 아닌, '존중'의 입장을 취했다. 중앙 정부와의 갈등을 표면화시키기보다는 최적의 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끝으로 서 의장은 세종보 존폐 논란을 두고 분열을 조장하는 분위기를 우려했다. 서 의장은 "반대 진영을 향한 맹목적인 비판은 여론 분열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의견 수렴과 갈등 조율, 합의 도출이라는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이하 세종시의회)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심사규칙)을 즉각 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9월 10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병현 교육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심사규칙이 제정된 2004년부터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예산은 2.2배나 증가하고 물가상승률은 37%에 달하는 등 제반 여건이 변했음에도 중앙투자심사 기준액이 100억 원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는 평가다.

결의안을 낭독한 상병현 위원장은 "일반 지자체는 3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만 중앙투자심사를 받지만, 지방교육행정기관은 1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대상"

이라며, "일반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아 인적·물적 자원이 낭비되고 각종 교육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지체되는 등 현행 심사규칙은 교육자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심사규칙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상 위원장은 교육부를 향해 "중앙투자심사 대상 기준 금액을 300억 원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교육자치 발전에 동참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그동안 상 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과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결의대회 개최를 통해 지속적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고 심사규칙 개정 필요성을 집행기관에 요청해 왔다.

한편, 이날 세종시의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제1기 의정모니터 간담회 개최

의정모니터링 성과와 역할,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8월 26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제1기 의정모니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금택 의장과 이영세 제2부의장을 비롯해 의정모니터 요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세종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의정 모니터단은 시정 및 의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보다 나은 제안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그간 의정모니터링 현황과 성과, 의회와 의정모니터 간 역할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



눴으며, 세종시 발전을 위한 의정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서금택 의장은 “모니터 요원들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서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는 물론, 의정활동 개선방안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제시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영세 부의장은 “의정모니터단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잘 경청해서 의정모니터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차기 의정모니터단 구성을 대비해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 '필승코리아 펀드'가입

서 의장 “핵심 소재와 부품 국산화를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할 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8월 27일 NH농협 세종점에서 부품과 소재 등 국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했다.

필승코리아 펀드는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이춘희 세종시장 등은 물론, 사회 저명인사들의 가입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필승코리아 펀드 운용에 따른 보수(0.5%)의 50%는 국내 기술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된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책은 미래 첨단산업 분야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의 소재와 부품, 장비 기술을 장려하고 육성하는 것”이라면서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가입을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 광역의회부문 의정대상 수상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장이 6월 28일 서울 영등포 아트홀에서 열린 제16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광역의회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사)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가 수여하는 의정대상은 광역·기초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의정활동이 타 의원에게 모범이 됨은 물론 활발한 의정활동과 공로가 인정되는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전국 17개 시·도 지역신문협의회에서 대상을 추천받아 1차 심사를 마친 뒤, 중앙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한다.

서 의장은 제3대 전반기 세종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 행보와 민주적 의회운영, 주요 현안이 발생

할 때마다 의원간담회를 통해 합의·조정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서 의장은 조치원을 지역구로 둔 재선의원으로 제2대 세종시의회에 입성해 현재까지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지역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서 의장은 “항상 낮은 자세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가슴 깊이 새겨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의원들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국지역신문협회는 전국 320여개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취재활동을 펼치고 있는 언론단체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선출

2019년 정기회서 임원 선출… 서 의장 “자치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장이 8월 20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 정기회에서 제16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서금택 의장은 향후 1년간 서울시의회 의장인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 제16대 후반기 임원진과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와 지방의회 간 활발한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임원진 구성에서 충청권역을 대표해 부회장으로 선출된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뿐 아니라,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장이 사무총장으로 선출돼 눈길을 끌었다.

서금택 의장은 “지방자치 전부 개정안 통과와 세종시의 행정수도 건설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제16대 부회장으로서 자치분권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신원철 회장 등 임원진 및 전국시·도의회 의장들과 화합해 적극적으로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한국법제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지역사회 발전 및 양 기관 선진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협력 다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6월 26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양 기관의 선진화를 위해 한국법제 연구원(원장 이익현)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서금택 의장을 비롯, 세종시의원 4명(안찬영, 이영세, 손현옥, 차성호)과 한국법제연구원 3명(이익현, 최환용, 김윤정)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실효적인 입법정책 수립의 중요성 대해 공감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상생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 양 기관은 ▲입법정책의 공동연구 ▲자



치법규의 입안 및 정비 ▲학술정보 공유
▲정책실무협의회 운영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서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자치법규가 적기 예 제·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외 법제 및 입법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2014년 1월 세종시 보람동에서 업무를 시작했으며, 이익현 제12대 원장을 중심으로 130여명의 직원이 법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이재현 · 노종용 · 손현옥 의원 제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이재현 의회운영위원장과 노종용 · 손현옥 의원은 7월 25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제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제7회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할을 알리고 시 · 도의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 전국시 · 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전국 시 · 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총 136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이번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한 이재현 의회운영위원장과 노종용 · 손현옥 의원은 모두 초선의원으로,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의회 민주주의 기반 확립과 일하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재현 의원은 소정면장과 전의면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 공직생활을 기반으로 시정 이해도가 높은 행정가 출신이다. 이 의원은 지난 1년여간 ▲농 · 축산업 선진화 연구모임을 통한 축산 냄새 저감 방안 등 지역 현안문제 해결 노력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원만한 의회 운영으로 의정 발전에 기여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을 통해 광역 의회의 기반을 확립해왔다.

노종용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권익보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역임하며 정무적 감각을 익혀온 이력이 있다. 노 의원은 지난

1년여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활발한 견제활동 ▲행정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활동 ▲활기찬 의회 분

위기 조성 등을 통해 의회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손현옥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정계 입문 전부터 지역 사회 발전을 모색해왔다. 손 의원은 지난 1년여간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세종시의 안전과 교육 개선에 기여 ▲도시계획위원회 등 집행부 소관 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활동 전개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청소년 정책 개발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남겼다.

이날 수상자들은 “이번 수상은 지난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이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않고 시민들의 뜻에 따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시상식을 찾은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세종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수상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시상식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병헌 의원,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제안



상병헌 의원은 8월 22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페스티벌'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사업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상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현행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개정을 촉구하며, 개정이 이뤄져야 교육자치의 확대와 실현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윤형권 의원, 시민문화시장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윤형권 의원은 8월 23일 시의회 의정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문화시장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협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윤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전통시장에서도 시민문화시장을 열어 시장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5월 대평시장에서 시민문화시장이 열려 700여명의 시민이장을 찾아 전통시장이 활기를 띤 바 있다.



윤형권 · 노종용 의원, 일본정부 경제보복 조치 적극 대응 나서



윤형권 · 노종용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 교육청 일본 전범기업(戰犯企業)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8월 6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일본 전범기업을 정의하고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 설정, 일제강점기 역사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손인수 의원, 새롬동 공공체육시설 조속건립 강력 촉구



손인수 의원은 세종시 새롬동에 공공체육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세종시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손 의원이 공동위원장인 새롬동 공공체육시설 조속건립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백홍기)는 지난 5월에 이러한 문제점과 요구를 세종시에 전달했으며, 현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김원식 의원, 행감 통해 2년 연속 시민 혈세 낭비 막았다



김원식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실하게 집행된 안전관리비 환수를 이끌어냈다. 건설사업관리업체의 감리 결과에 따라 세종SB플라자 산업안전관리비 명목으로 부적절하게 집행된 안전화와 안전모, 수건 구매비 등이 시 재정으로 환수 조치됐으며 총 금액은 1,470여만원에 달한다.

김원식 의원, 공항행 버스 증설 기여

세종시는 운수업체와 관할 지자체인 충남도와 협의해 7월 11일부터 세종~인천공항행 시외버스 운행횟수를 4회 증설하고, 증설한 시외버스는 조치원을 경유해 운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원식 의원은 제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북부지역 주민들의 인천공항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윤형권 의원, 최근 자사고 문제 열띤 토론 벌여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은 6월 29일(토) TJB 대전방송에서 방영된 열린토론에 출연하여 '흔들리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이하 자사고),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윤 의원은 "자사고 정책을 바로 폐지하자, 계속 존치하자는 식의 논란은 무의미하다"며, "정당한 평가를 통해 자사고 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평가 결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 위반으로 퇴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실패를 교훈 삼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재도전해야



전통시장에는 문화와 역사 등 지역 고유의 특색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각종 편의시설 등이 현대화되더라도 전통시장을 찾는 '킬러 콘텐츠'는 특산물과 지역 음식, 그리고 정감 어린 상인들이 빛어내는 정취에 있다. 표준화와 대형화된 대형 마트에는 없는 지역 정서가 전통시장에 깊숙이 뿌리 박혀 지금도 이어져오고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의 위상은 예전만 못하다. 2000년대 초반 40조원 대에 육박하던 전국 전통시장의 매출은 2013년 19조원대로 절반 이상 줄었다. 최근 5년간 매출도 정부의 현대화 사업 등 각종 지원 등에도 정체 상태라고 한다. 이는 그간 정부의 지원방향이 다소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의미다. 전통시장을 깔끔하고 쾌적하게 정비하는 동시에 시장을 어떤 콘텐츠로 채워야 할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다.

매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전국우수시장 박람회가 열린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한곳을 개최지로 선정해 시장 홍보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러한 대규모 행사를 기회로 삼아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을 알리고, 나아가 지역을 알리는 마중물로 삼기도 한다. 하지만 전통시장 육성은 일회성이나 전시성 행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시장에 얹힌 역사 발굴은 물론, 지역민들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과거 시장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재현하고 재해석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2020년은 세종시 전통시장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시기다. 1770년(영조 46년) <동국문헌비고> 향시편에는 조치원장이 4일과 9일에 열린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비록 세종시가 2020년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이번 도전을 교훈 삼아 차회 박람회 유치를 준비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회 준비와 운영, 이후 홍보·관광 효과 등으로 적잖은 특수도 기대되는 만큼,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유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관내 전통시장을 살리려는 시도는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기적으로 전국 우수시장을 현장 방문해 시장 활성화 요소를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공모전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적용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시에서 운영 중인 도시재생대학 과정을 활용해 우리 지역을 더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을 리더'들을 양성할 필요도 있다. 마을 리더들이 주축이 된 도시재생 사업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녹여낸다면,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기대된다.

얼마 전 인터뷰 자리에서 한 언론인이 '과거 조치원장 상인들의 전통 의복을 재현해 현장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들은 적이 있다. 실현 가능성은 떠나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다. 조치원장은 과거 나무전, 토목전, 닭전, 쇠전, 옹기·유기전, 가구전, 소전, 싸전, 고추전, 마늘전, 채소전, 어물전 등 품목 별 소그룹 형태의 장이 존재했다.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특정 기간을 정해 '복승아의 날' '배의 날' 등 특정 품목을 집중적으로 판매·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아나바다 장터와 전통상인복 체험 등 다각도로 참여 프로그램을 연계해 전통시장을 찾는 연령층을 고르게 해나가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된 세종시의 강점이 행정기능의 집적화라면, 그로 인한 도시 콘텐츠 부족이 약점으로 꼽힌다. 해법은 도농복합도시에 있다. 조치원전통시장을 비롯한 읍·면 지역에 위치한 장터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현대적으로 확장하는 작업은 향후 세종시 문화자산을 형성해가는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서 금 택

‘세종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시급하다

세종시 상권 활성화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상가 과잉 공급에 따른 높은 공실률과 상권 침체로 인한 폐업률 상승은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기회와 잠재력이 충분한 곳이다. 실제 세종시 인구는 2012년 출범 이후 연 평균 35% 증가해 최근 34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47년까지 전국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인구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종시 인구는 2030년 48만명을 넘어서 2040년에는 5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인구 유입 효과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통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먼저 ‘상점가 지정과 상인회 구성’이다. 세종시와 행복청이 지난 6월 말 발표한 상가활성화 대책은 상업용지 공급을 수요에 맞게 조절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상가가 이미 과잉 공급돼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상업용지 공급 조절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점가 지정과 육성은 주요 상권을 묶어 통합 관리하고, 지역 상인회 조직과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특히 상인회가 있어야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상점가 활성화에 구심점이 되는 상인회 구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시책 사업에 근거가 되는 지원 조례 제·개정도 필수적이다. 현재 세종시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상권 활성화’와 ‘지역 상생’, ‘특화거리 지정’ 등 보다 다양하고 세밀한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이 긴요해 보인다. 실제로 경기도와 부산광역시에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고,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특화거리 지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해놓기도 했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문기관을 설립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위탁한 사례도 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과 성남과 창원시의 상권 활성화재단 등이 대표적이다. 세종시는 이러한 타 지자체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서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사무를 전문기관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최근 연구 용역을 의뢰해 ‘한솔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솔동 상권 침체의 심각성을 데이터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번 한솔동 상권 실태 조사는 단순히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만 그치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한솔

동 상권의 위기 속에 숨겨진 기회 요인들을 찾을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상가 방문 빈도가 주 2회 이상이었고, 도보로 상가를 이용하는 경우가 64.7%로 다수를 차지한 부분, 월 평균 가구 소득이 높은 점 역시 세종시 상권 활성화의 잠재적 가능성을 일깨워준다. 한솔동 상권 실태 조사는 해당 지역뿐 아니라 유사한 상가 환경을 지닌 다른 동 지역 상가 밀집지역에도 충분히 값진 정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함께 세종시 상권 침체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도심공동화’ 해소 대책 마련도 이뤄져야 한다. 세종시는 타 지역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많은 도시적 특성상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저녁 시간대와 주말에 상가 이용률이 저조하다.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까닭이다. 사실이 같은 현상은 세종시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도 “7일 임대료 내고 5일 영업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 정도다. 상권 활성화 문제를 지역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국가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정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인구 유입 정책과 시도 간 이동 가능성이 높은 20~30대 1인 가구의 유인책 등 정주 여건 개선은 상권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종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이제 첫걸음을 뗀 수준이다. 지역 상인들과 시의회와 시 집행부, 시민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모으고 합치된 지향점을 찾아나가야 한다. 주요 프랜차이즈와 전국 맛집 유치, 점포 특성화 지원은 물론, 주요 상권 단위로 지역 축제를 개발하거나 청년 창업과 사회적경제조직을 연계한 소형 점포 지원, 상가 활성화 날을 지정해 일정 기간에 특정 상권으로 소비 유도, 상권 투어 스탬프와 상권 할인 쿠폰 발행 등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세종시가 ‘상가 공실률 1위’라는 오명을 벗고,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내년부터 발행되는 세종시 지역화폐를 전환점으로 삼아, 2020년이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원대한 도전의 원년으로 기억되길 기대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부의장 안찬영



김 원 식 의원



2030년 세종시 재정 적자 대비 세입원 적극 발굴해야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시 재정 자립도 2위인 세종시가 현재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시 재정 구조로 인해 2030년에는 재정 적자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김원식 의원(조치원·죽림·번암)은 8월 27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재정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해 결산 결과 세종시 세입 중 약 50%에 해당하는 6,941억원이 지방세이며 이중 취득세가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2019년 지방세 징수액을 추계한 결과 당초 예측한 7,154억원보다 최대 791억원 감소한 6,363억 원이 징수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그중 취득세 감소폭이 653억원으로 가장 높다"고 밝혔다.

문제는 주택 분양 물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취득세 역시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김 의원은 "우리 시 생산가능인구 상승폭도 미미해 지방소득세 증가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최근 3년간 세종시의 세출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다. 김 의원이 2018년 예산결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인건비와 운영비, 정부 간 이전비용과 민간 등 이전비용, 기타 비용 등으로 지난해 총 1조 108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30년 기준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유지비와 인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세종시립도서관 등을 포함한다면 우리 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은 연간 2,528억원을 훌쩍 넘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14년 이후 5년간 세종시의 세입·세출 평균 증가율에 따라 "2030년에는 세출이 세입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분석과 모니터링 결과 공시를 통한 균형재정 유지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 당부 ▲민간 기업 유치 등 세입원 적극 발굴 등 3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위기를 기회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이번 5분 자유발언이 시 재정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상 병 헌 의원



세종시의 자족기능 필수요건인 대학 캠퍼스 유치 시급

대학 정원 확보를 위해
우리시는 좀 더 노력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정치적인 결단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

“한전공대 설립 사례에서 보듯 세종시에 대학설립 여부의 핵심은 교육부의 정원 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학부와 대학원에 적어도 2천명선의 정원이 인가되어야 유수 대학들이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상병헌 의원(아름)은 8월 27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자족기능의 필수요건인 대학 캠퍼스 유치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한국전력은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한전공대 설립을 발표했고, 정부는 학부 400명, 대학원 600명에 달하는 정원을 인가했다.

이에 반해 현재 세종시는 교육부 정원 인가 문제로 대학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복청은 국내외 17개 대학과 총 23건에 달하는 입주협약을 체결했지만 이중 입주를 확정지은 대학은 현재까지 카이스트 융합의과학원과 충남대 의대 등 4곳에 불과하다.

상 의원은 “나머지 13개 대학들은 아직까지 입주 여부가 불투명하고 최근 입주를 확정한 산타체칠리아 음악원과 트리니티 대학도 설립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 의원은 대학유치 업무를 전담할 ‘대학 유치 추진단’ 운영을 제안했다. 이는 세종시와 행복청, 교육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대학 유치 업무의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또 상 의원은 국립보건의료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등 특성화 대학들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상 의원은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의 이전 계획에 따라 여러 지자체들이 2016년부터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어 세종시 역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상 의원은 종합대학 단독 캠퍼스 조성을 강조했다. 세종시 집현리 4-2생활권 중 종합대학 조성 부지를 활용해 의료복합형 대학캠퍼스를 유치하자는 것이다. 상 의원은 이를 위해 LH의 적정한 토지공급 단가 조정과 입주대학 교직원에 대한 정주여건 인센티브 제시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대학 정원 확보를 위해 우리시는 좀 더 노력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정치적인 결단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윤희 의원



조례와 법률 개정 통해 안전한 폐의약품 수거체계 구축해야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 수거·처리 개선 방안

최근 타 지역에서 한 제약회사 직원의 양심 고백으로 수거된 폐의약품 불법거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반 가정에서 발생한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이윤희 의원(소담동·반곡동)은 8월 27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대에 올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 수거·처리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세종시 역시 관내 약국에서 수거된 폐의약품의 경우 제약회사 직원들이 보건소로 전달하는 실정이다. 이는 이날 이윤희 의원이 "현재 처리 방법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유다.

이 의원이 제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답변자 중 8%만이 폐의약품을 약국이나 보건소에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답변자들은 대부분 쓰레기통이나 하수구, 변기 등에 폐의약품을 버리거나 방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경우 생태계 파괴는 물론, 토양과 수질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이윤희 의원은 "유해

세균들이 항생제를 비롯한 여러 의약품 성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슈퍼 박테리아로 인해 환경 및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시의 지난해 폐의약품 연간 수거량은 2016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2,500kg으로 집계됐다. 세종시는 지난 1일부터 한 달 간 폐의약품 수거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이어서 조례와 법률 개정을 통해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2017년 '폐기물관리법'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조항이 신설되면서 폐의약품 처리에 대해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 성과를 평가하도록 돼 있지만 우리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마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안전한 수거체계를 위해 업무 위탁과 전문 인력 투입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폐의약품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 홍보활동 ▲약국의 적극적인 수거 동참을 기반으로 한 약국 내 폐의약품 보관함과 홍보물 배포 등 지원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국민 안전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폐의약품 관리 문제점을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지자체는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의원



지원 기준 완화로 생분해 멀칭비닐 등 친환경 농자재 보급 확대 서둘러야

영농 폐비닐 수거율 향상 대책으로
읍·면 권역별 전문수거인 제도 도입과
수거보상금 현실화를 시급히 추진해달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이재현 의원(소정·전의·전동)은 8월 27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생분해 멀칭비닐 등 친환경 농자재 보급 확대 서둘러야'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이재현 의원은 잡초 방제와 적정한 지온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멀칭비닐의 수거가 제 때 이뤄지지 않아 농촌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멀칭비닐은 농산물 성장 촉진과 수량 향상이라는 이유로 모든 밭작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제시한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세종시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902t에 달하는 데 반해, 폐비닐 수거율은 이중 24%인 218t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상당량의 폐비닐이 땅 속에 방치돼 있거나 불법 소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농 폐비닐은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 환경을 파괴시켜 장기적으로 농가 소득은 물론, 농촌 미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영농 폐비닐 수거율 향상 대책으로 읍·면 권역별 전문수거인 제도 도입과 수거보상금 현실화를 시급히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폐비닐 수거를 농가의 둑으로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와 농촌이 처한 인구 고령화 등과 맞물려 수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의원은 생분해 멀칭 비닐을 포함한 친환경 농자재 보급 지원 사업을 시급히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친환경 멀칭 비닐은 일반 비닐에 비해 구입비용이 2~3배 이상 비싸 농가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세종시의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대상을 기존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신청 의향이 있는 영세 농가로 확대해야 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친환경 농자재 보조금 지급 확대로 생분해 멀칭 비닐 이용률이 높아지면 친환경 재배 면적 확대로 33만 시민들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는 물론, 농가 생산성이 향상돼 농촌의 희망찬 미래를 안기는 정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유 철 규 의원



퇴근 후와 주말에도 즐길거리 넘치는 세종시를 만들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유철규 의원(보람·대평)은 제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운동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을 제언했다.

이날 유철규 의원은 '가장들은 주말만 되면 어디로 놀러가야 하나 고민된다' 등 지역 언론 보도와 시민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퇴근 후와 주말이 즐거운 활기찬 세종시' 조성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유 의원은 각종 실내외 체육시설과 다양한 놀이시설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시민들과 인접한 거리에 야외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고 생활 체육시설과 실내운동의 경우 학교 체육관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은 산악자전거길과 강변을 활용한 드론비행공간 조성,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등을 통해 스포츠 마니아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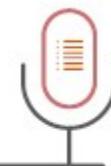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지역별 소규모 생활체육대회의 정기 개최와 숙박시설 확충 등을 통해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고 놀거리와 즐길거리가 넘치도록 도시 분위기를 바꿔야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는 평일 저녁 시간대와 주말마다 야외활동 등 여가 공간 부족으로 해당 시간 대에 인접 도시로 향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끝으로 유 의원은 "세종시 청소년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9.4%가 청소년 여가활동 장소가 부족한 것으로 답했다"며 "아동친화도시인 세종시에 청소년들을 위한 야외 운동 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 스스로 새롭고 다양한 미래를 설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시민들과 인접한 거리에
야외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고
생활체육시설과 실내운동의 경우
학교 체육관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주길 바란다
—



김 원 식 의원



인 · 허가 전담부서 설치 촉구

여러 부서로 분산된 인허가 창구를 일원화하여 시민 중심의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 주권 세종시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김원식 의원(조치원 죽림 · 번암)은 9월 10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허가과 설치 · 운영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를 아우르는 전국 유일의 단층제 자치단체로 계획된 행복도시 건설로 주택과 상가, 공장 등의 신축이 이어져 각종 민원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3년간 건축 관련 허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건축 허가 3,563건, 개발행위허가 3,688건, 산지전용허가 887건, 농지전용허가 1,151건, 공장등록 326건, 점용허가 3,028건으로 총 12,643건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층제로 인한 인 · 허가가 폭증하고 있는데도 세종시의 경우 허가 전담부서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부서 간 업무 협의에 따른 처리기간 지연과 허가를 위한 관련 부서 방문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를 예로 들면서 현장 안내와 여러 관련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준공 신고할 때까지 복잡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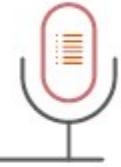
김 의원은 행정서비스는 고객인 시민의 입장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청사 업무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인 · 허가 부서를 분산 배치한 시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는 과거 10년 전부터 '원스톱 민원창구'운영을 추진해 왔으며, 현 정부에서도 2018년 '정부 혁신 종합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전국 자치단체에 확대 시행 결과 전국 229개의 시 · 군 · 구 중 178개 자치단체에서 원스톱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여러 부서로 분산된 인허가 창구를 일원화하여 시민 중심의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 주권 세종시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조속히 허가과를 설치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기대한다"라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박 성 수 의원



미래를 위한 첫걸음, 올바른 역사교육에서 시작된다!

관내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시관 등에
친일인명사전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야 한다

한국 수출 규제 조치와 평화헌법 개정 등 과거 일본 군국주의를 재현하려는 일본 아베 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에 맞서 세종시 관내 교육현장에 역사교육 활성화와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조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박성수 의원(종촌)은 9월 10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래를 위한 첫 걸음, 올바른 역사교육에서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박성수 의원은 "초·중·고 24개교 학생 동아리와 역사 관련 교사 중심의 8개 연구모임이 활동 중"이라며 "이는 세종시 전체 초등학교의 12.5%, 중학교의 37.5%, 고등학교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의원에 따르면 역사 동아리 주요 활동내용이 그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일제강점기와 항일·독립운동, 독도 문제 등과 같이 근·현대사 이후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역사 동아리 활동 실태를 토대로 '세종시교육청 초·중·고등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조례에 체계적인 역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교과과정의 기본원칙,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리될 수 있는 세부 조항들을 담겠다는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를 맞아 경제 보복 조치에 이어 평화 헌법 개정 등을 꾀하는 일본의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관내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시관 등에 친일인명사전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야 한다"며 "이는 다시는 이 땅에 통한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역사 바로세우기 실천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 박 의원은 '세종시교육청 초·중·고등학교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언급했다. 이는 교육 현장에 스며든 전체주의나 군국주의 훈육 문화 대신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교육정책 방향을 조례로 제정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가치관을 심어주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일제강점기 역사 교육은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것 이 아닌 학교 내 남아 있는 식민잔재 청산과 더불어 학생들이 선조들의 자주독립과 애국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계승하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지난날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따른 진심어린 사죄, 이에 대한 우리의 용서, 그리고 영원한 기억'만이 한·일 간의 얹힌 실타래를 푸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안 찬영 의원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물품구매 촉진 제도 마련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안찬영 의원(한솔)은 9월 10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물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안찬영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 · 고용불안 ·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사회적 경제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지역민들이 사회문제인식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추진해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재분배하는 사회적 가치의 선순환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세종시의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과 불충분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포용적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에는 현재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함해 총 180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설립돼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조직의 양적 성장에 비해 고용률과 매출증가율 등 질적 성장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 의원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각각 상위 5개 업체가 고용자 수와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사회

적경제조직의 고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타 시 · 도의 성공사례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제도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2년 사회적경제조직 물품의 공공구매 확대 정책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경제조직에 매출 증대와 판로개척, 고용 증가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 의원은 이들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화와 자생력 제고 방안으로 ‘공공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조직 물품의 우선구매를 확대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사회적경제조직 물품구매 촉진 조례 제정 ▲사회적경제조직 물품 의무구매 확대를 위한 부서별 책임조달제 실시 ▲사회적경제 물품 의무구매 공시제 시행 등 구체적인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에 제안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
공공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조직
물품의 우선구매를 확대하는 정책 제안
—



이태환 의원



조치원 제2청사와 북부권 아우르는 구청단위 행정청사 건립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이태환 의원(신흥·신안·봉산·서창)은 9월 10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치원 제2청사 건립에 대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랐다.

이날 이태환 의원은 발언 도입부에서 “5년 또는 10년 그 이상 되는 미래의 수많은 일들은 현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며 시정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춘희 시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에 대한 평가는 훗날 시민들에 의해 역사로 남을 것”이라면서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시의 부족한 청사 문제는 사실 예측 가능 했고 여러 차례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제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당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치원 지역에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구 연기군청 부지를 활용해 제2청사 건립’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2018년 제1회 세종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청사 증축 연구 용역 신규 사업에 대해 기정액 대비 1천8백만원을 증액한 4천만원을 배정하고, 조치원청사 활용 계획에 대한 추가 연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구 연기군청 부지 활용은 물론, 조치원 제2청사 건립계획도 모두 무산됐다. 이 의원은 “당시 예결위에서 증액된 예산도 집행되지 않은 채 조치원 제2청사 건립에 대해

‘별관 또는 제2청사로 본청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제시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현재 세종시는 경제산업국과 환경녹지국, 도시성장본부와 건설교통국이 민간 상가를 임차해 청사로 활용 중이다. 읍·면·동과 의회사무처 등 인원을 제외하고 본청 근무 인원(515명) 대비 약 39%에 달하는 인원(328명)이 민간 외부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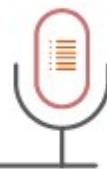
이 의원은 “이로 인해 시민들뿐 아니라 공직자들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예견된 일이며 발 빠르게 대비하지 못한 시 행정에 책임이 있다”면서 “본청 별관 증축과 관련해 제2청사 건립을 포함한 계획으로 전면 재검토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 경제산업국과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 제2청사 건립 ▲ 북부권을 아우를 수 있는 미래 행정구 시대를 대비한 구청단위 행정 청사 건립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자신의 공약이자 현 이춘희 시장의 2014년 공약임을 강조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제2청사 건립은 조치원 지역민들의 기대와 바람, 균형발전이라는 의지를 담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만큼 시 정부의 의지를 담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채 평석 의원



급속히 고령화되는 세종시에 노인 파크골프장 확충해야

노인 복지향상과 100세 시대에
걸맞은 체육활동으로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파크 골프장 조성을 적극 추진해달라

세종시의 고령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고령 인구를 위한 파크 골프장 등 스포츠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채평석 의원(연동·부강·금남)은 9월 10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인 여가시설 조성 필요에 따른 파크골프장 조성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채 의원에 따르면, 아동친화도시로서 국제 인증을 받은 세종시는 현재 ‘세종형 고령친화 도시 조성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인들에 대한 세부적인 시책은 다소 부족하다는 게 채 의원의 주장이다.

최근 ‘세종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세종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2년 1만7천여명에서 올해

7월 기준 3만여명으로 증가하며 급속한 고령화 현상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읍·면 지역은 각각 초고령사회와 고령사회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주로 TV 시청이나 휴식 등 소극적인 활동이 대부분”이라며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는 말처럼 6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근력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인들의 신체활동을 유도함으로써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예방적 사회복지 시스템을 마련하는 기틀로 삼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채 의원은 정책 대안으로 노인들의 근력 강화를 위한 파크 골프장 조성을 제시했다. 파크 골프는 체력적인 부담이 적은 데다 위험하지 않아 노인들을 위한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다.

채 의원은 “현재 세종시 아름동에 조성된 파크 골프장의 경우 규모 등이 협소해 주말에만 약 250명이 몰려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세종시에 파크 골프장이 부족해 대전과 천안, 공주 등 인접 도시로 파크 골프를 치러 다니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채 의원은 “노인 복지향상과 100세 시대에 걸맞은 체육 활동으로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파크 골프장 조성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긴급현안
질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차성호 의원(장군·연서·연기)은 9월 10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 방안과 긴급방재 대응체계 문제점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차 의원은 첫 번째로 “세종시민들과 함께 일본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법부를 무시한 저사이자 과거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겠다는 안하무인격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차 의원은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일본 전범기업 스티커 부착운동은 물론, 일본 여행 자제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제법 위반’ 논란에 대해 차 의원은 “일본 전범 기업은 과거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준 기업들”이라며 “이들 기업에 대한 제품 불매 운동을 단순히 국제법 위반의 문제로만 접근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차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장군면 산학농장 인근 악취와 파리 떼 문제로 실시했던 13일간 방제활동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차 의원은 지난 ‘장군면 파리 떼’ 사건에 대해 ▲관련부서의 소극적 초기 대응으로 파리 유충이 성충으로 급속히 번식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 초래 ▲전문 인력 없이 방역작업이 진행돼 친환경 재배농장에 살충제 살포와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사고 위험 노출 ▲불량폐

차 성 호 의원

일본 경제보복 대응책과 긴급방재 시스템 개선책 마련해야

기물 살포에 대한 원인 규명과 불법 행위자 처분에 대한 늑장 대응 등을 지적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차 의원은 “당시 방역 과정에서 살충제 원액 1,441리터를 100배 희석한 144,100리터가 살포되었다”며 “250배인 희석비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자원봉사자 등 현장 관계자들에게 매뉴얼이나 안전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답변석에 선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파리 떼 사건과 관련해 발생 초기 소관 사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서 간 의견 조율 및 대응 방향에 일부 혼선이 생긴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경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특사경 임무에 속하지 않은 비료관리법 위반 사항은 현재 9월 2일부터 세종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향후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연재해와 대형재난사고뿐 아니라 긴급방재 상황 발생 시 전문가 참여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총괄지휘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순현 행정부시장



의회운영위원회

①

제5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제57회 임시회 기간 중인 8월 2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했다.

②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

제57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의 건'과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③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협의

제57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4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과 긴급방제 대응 체계 문제점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심사했다.



이재현
위원장



이윤희
부위원장



안찬영
위원



유철규
위원



윤형권
위원



이영세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①

2019년도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공무국외연수

7월 1일부터 8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2019년도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공무국외출장’을 마쳤다. 소속 위원들은 현지에서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인공호수와 ILC칼란어학원(한국어학원) 방문 ▲푸트라자야 관리청과 쿠알라룸푸르대학(한국어학과) 방문 ▲싱가포르 퀭 와이 시우 요양병원과 싱가포르 보건부 산하 법인인 AIC(통합케어기구 · Agency for Integrated Care) 방문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방문 등 일정을 소화했다.

②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

제57회 임시회 기간 중인 8월 2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시청, 감사위원회,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순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 답변을 실시했다.

③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제57회 임시회 기간 중인 8월 29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관광국, 대변인,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한 데 이어, 3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읍 · 면 · 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했다.

④

조례안 및 동의안 · 변경안 등 심사

제57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3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문화체육관광국, 운영지원과 소관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변경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17건을 심사한 데 이어 9월 4일 제5차 회의를 열고 보건소,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8건, 동의안 9건, 기타 1건 등 18건을 심사했다.



채평석
위원장



이윤희
부위원장



노종용
위원



박성수
위원



안찬영
위원



이영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①

'명학-전의 산업단지 환경 개선' 현장 간담회

8월 13일 명학산업단지와 전의산업단지를 차례로 방문해 관내 입주 기업체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차성호 위원장을 비롯한 김원식 · 유철규 · 손인수 의원과 명학 · 전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 의회 임원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명학산단 입주기업체와의 간담회에서는 기반시설 교체비용 지원과 전광판 설치 등 환경 개선 요청이 있었으며, 이 어진 전의산단 입주기업체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내 도로연결과 보강토 옹벽 위험시설 안전관리 등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②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

제57회 임시회 기간 중인 8월 2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에 이어 '국산 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 연구 출연 동의안'과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③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제57회 임시회 기간 중인 8월 29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한 데 이어, 3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환경복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후 계수 조정과 의결을 실시했다.

④

조례안 및 동의안 · 변경안 등 심사

제57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4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복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조례안 15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의견 청취 2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차성호
위원장



유철규
부위원장



김원식
위원



손인수
위원



이재현
위원



이태환
위원

교육안전위원회

①

급식 중단 실태 파악 위해 보람초 방문

상병현 교육안전위원장은 7월 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총파업에 따라 급식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을 방문했다. 교육안전위원장은 학교 관계자 및 교육청 담당 부서로부터 총파업에 따른 대체급식 실시와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 받은 뒤,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학생들이 교실에서 빵과 우유로 식사하는 모습을 둘러봤다.

②

중학교 배정 개선안 심층집단면접 참석

교육안전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중등교육과)에서 7월 1일 개최한 '중학교 배정 개선방안 정책연구' FGI(심층집단면접)에 참석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심층집단면접에서 나온 의견 수렴 결과와 7월 초 설문조사, 7월 중순 중간보고회, 8월 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개선된 중학생 배정정책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③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

제57회 임시회 기간 중인 8월 2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교육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한 데 이어, 의원 발의 조례안 8건과 기타안 1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3건 등 총 12건을 심사했다. 또한 8월 29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시장 제출 조례안 1건 등 총 4건을 심사했다.

④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제57회 임시회 기간 중인 8월 3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했다.

⑤

학부모 간담회 개최

교육안전위원장은 9월 4일 중회의실에서 '1생활권 내 중학교 과밀 및 교육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1생활권 내 중학교 과밀 현상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과 세종시 교육 현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7월 18일 세종시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회 연합회 간담회에 이어 8월 26일 1생활권 학부모 간담회를 차례로 개최한 바 있다.



상병현
위원장



윤형권
부위원장



박용희
위원



손현옥
위원



임채성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환 위원장 · 손현옥 부위원장 선임 제2회 추경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5일 제1차 회의를 통해 이태환 의원과 손현옥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2019년도 제2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제2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1조 6,890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6,243억원에서 647억원($\Delta 4.0\%$)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 추경에 대응한 대기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사업과 지역 균형 개발 및 경제 활성화, 서민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 본관 청사관리 등 총 16개 사업에서 8억 6,320만원을 삭감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모두의 놀이터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등 총 32개 사업에서 8억 6,32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그 외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예결위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음용수 사각지대인 상수도 미 보급지역의 수질관리 총력 ▲A형 간염 급증(20~40대)에 따른 백신 확보 및 홍보 집중 ▲대중교통 표방도시다운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방안 마련 ▲생활 폐기물이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시민 유도책 강구 ▲제대로 된 상점가 육성을 통한 포괄 상권 형성이 지역 화폐의 성패 좌우 등을 강조하며 관련 부서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태환 위원장은 집행부에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줄 것”과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추경안을 계획대로 집행하여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무리 했다.

한편, 예결위에서 심사한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9월 10일 제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태환
위원장



손현옥
부위원장



박성수
위원



박용희
위원



손인수
위원



안찬영
위원



이영세
위원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① 국회용역 결과 입장 발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이하 행수특위)는 8월 13일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회세종의사당 규모 및 대안별 비용 분석 △입지 검토 △종사자 정착방안 등이 실행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행수특위는 국회가 국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회 일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대안(연구용역 결과)을 내놓았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행수특위 윤형권 위원장은 “국회는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50억을 반영해야 세종 의사당 설치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며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실행을 재차 강조했다.

② 자문단 위촉식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8월 16일 의정실에서 행정수도 완성특별위원회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은 행정수도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김중규(세종의소리 대표), 문인수(前화순군 부군수), 손영희(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 안용준(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이민기(공주대 교수), 이상진(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임덕수(한국전통문화대 교수), 임봉철(한국농촌지도자 세종시 연합회장), 임승달(前강릉대총장), 정연숙(매거진세종 대표), 최정수(한국영상대 교수) 등 총 11명이다.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이날 지방분권세종회의(舊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 세종시청 실무지원단 등이 참석한 행정수도완성추진단 간담회가 위촉식에 이어 진행됐다.

③ 윤형권 행정수도완성특위 위원장, 지방분권T/F 회의 참석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윤형권 위원장은 8월 19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



의회 지방분권T/F 9차 회의에 참석했다.

윤형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토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세종시가 그 중심에 있는 만큼 최근 발표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T/F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윤형권
위원장



박용희
부위원장



박성수
위원



문인수
위원



손현옥
위원



임채성
위원



채평석
위원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현장점검 조치결과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제3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차성호)는 7월 18일 1차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상황 청취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특위 위원 및 시민참여단, 관계기관 등에서 41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와 질의응답, 결과정리 순으로 진행됐다.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윤희 부위원장은 “클럽하우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쉼터 철거와 관련해 설계서 상에 없는 시설물이라도 시민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물이라면 설계변경을 통해 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손현옥 위원은 “고운뜰공원 내 고사목 및 잡목이 우거져 있어 시민들이 등산하는데 불편사항이 많다고 지적하고 산림정비 및 수로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차성호 위원장은 행복도시 내 식재되어 있는 고사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호수공원 주변 가로수 및 조경수를 표본 굴착한 결과, 식재 시에 고무밴딩 및 철사가 그대로 매여져 있는 것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간담회 때 방영함으로써 행복도시 내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안찬영 위원은 “고사목 문제 관련 전담 T/F팀을 만들어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강구하자”며, “자동집하시설 일반쓰레기 함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존 설비 상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설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시설물 인수특위에서는 지난 4월 10일 5생활권 공동구 3구간 등 총 4개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217건의 지적사항을 관련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차성호
위원장



이윤희
부위원장



안찬영
위원



임채성
위원



박성수
위원



손현옥
위원



손인수
위원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대표 손현옥 의원, 박용희 의원, 유철규 의원)

① 간담회 개최



7월 9일 제2차 간담회를 열고 청소년 정책 활성화 방안과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연구모임 활동에 대한 세부계획 및 일정을 협의하고, '세종시 교육청 청소년정책 현황 및 개선과제'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7월 24일 제3차 간담회를 열고 청소년정책 활성화 방안과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학생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이 이뤄졌다.

8월 21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회의실에서 제4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어린이 놀 권리 조례안' 등 청소년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데 이어, 지난 7월 30일 서울 하자센터와 8월 14일 수원 청개구리 연못에서 실시했던 현장방문 성과를 공유했다.

② 현장방문 실시



7월 3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는 하자센터를 방문했다. 현장방문에는 세종시교육청 학부모 기자단 5명과 학생기자단 4명도 동행했다. 회원들은 센터 담당자로부터 기관 소개를 들은 후 하자센터의 청소년 활동공간을 둘러본 데 이어 현장 관계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8월 14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청개구리 연못을 방문했다. 청개구리 연못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휴식 및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이날 회원들은 청개구리 연못의 활동공간을 순회하면서 공간별로 다양한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끝으로 기관 관계자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③ 초청 강연 개최



8월 13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창욱 박사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세종시의 현재 청소년정책 현황과 앞으로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최근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환경변화에 대한 설명,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이 이뤄졌다.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 박성수 의원, 이영세 의원, 손인수 의원, 이윤희 의원)

① 간담회 개최

7월 10일 청주 선해 어린이집과 창의숲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회원들은 세종시 농촌 지역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주 농촌 지역 어린이집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성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손인수 의원, 이윤희 의원, 임이랑(전의산단어린이집 원장), 허혜진(세종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일주(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박성수 대표의원은 “세종시 농촌 지역 어린이집(정원 21~39인)에 원장·보육교사 겸직이 가능하도록 특례 인정이 결정되는 등 도농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보육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번 현장방문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로 해서 도시팽창 과정에서 소외되는 아동이나 어린이집이 없도록 농촌지역에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② 간담회 개최

8월 20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세종시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성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영세 의원, 손인수 의원, 이일주(공주대학교 교수), 임이랑(전의산단어린이집 원장), 허혜진(세종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회원 7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유보 격차 완화의 필요성 및 세종시 유보 격차 완화를 위한 연구과제에 대해 토의한 데 이어, 이날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토론회 개최에 합의했다.



세종시 농·축산업 선진화 연구모임

(대표 이재현 의원, 채평석 의원, 차성호 의원)

①

부강면과 충남 홍성군 축산농장 현장방문

7월 29일 '세종시 축산 악취저감 T/F'와 합동으로 세종시 축산 악취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충남 홍성군과 세종시 부강면 축산농장을 현장방문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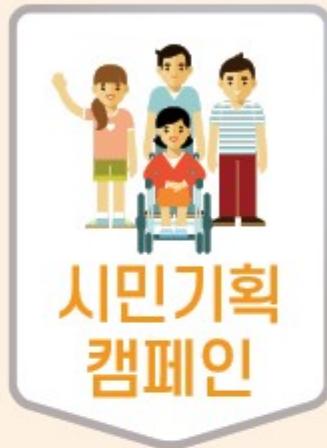
이날 현장방문은 이재현 대표의원, 채평석 의원, 차성호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및 축산 악취저감 T/F 회원 등 14명과 관계공무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홍성군 장곡면에 위치한 오성농장을 찾아 양돈 악취 저감을 위한 액비순환시스템 운영 우수 사례를 견학하기 위해 마련됐다.

액비순환시스템은 돼지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리 분뇨를 미생물 처리로 발효액비화 한 후, 그 액비를 돈사 내부로 유입해 연속 순환함으로써 양돈분뇨 냄새를 저감하는 시스템으로, 세종시는 지난 5월 농식품부 공모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오는 2020년 말까지 관내 양돈농가 17개소에 액비순환시스템, 밀폐발효기, ICT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세종시 부강면에 위치한 충광농원을 방문, 지난 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 고액분리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재현 대표의원은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축산 냄새 저감 우수 사례를 세종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계속해서 도·농 상생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현장방문 활동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 정책 건의 및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베리어 프리' 장애인 화장실 벽을 낮추다-2

세종시에 거주하는 최재천 씨는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화장실 안내 지도 제작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했다. 그동안 자신이 직접 조사한 세종시 내 장애인화장실 개방 여부와 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공개했다. '참여정신과 시민의식을 통해 시민주권자치를 완성해나간다'는 취지로 장애인화장실 안내 지도를 기획 연재한다.

안내 지도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help_me_sejongcity



세종시 장애인화장실 지도

(나성동 첫마을 BRT 양쪽 상가 일대)

주요 안건 처리 현황

제57회 임시회



제57회 임시회는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15일간 진행됐다. 이번 제57회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 청취와 제2회 세종시 추가 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동의안 등 73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 보고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1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32건,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23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14건,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 등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안찬영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조정함(안 제3조제2항제2호), '자치분권문화국'을 '자치분권국,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변경하고 '보건 환경연구원', '세종시복지재단'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신설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도시성장본부'를 신설함(안 제3조제2항제3호),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중 '시민안전국'을 '시민안전실'로 변경 함(안 제3조제2항제4호)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제 안 자 시장

주요내용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정함(안 제3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등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록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제 안 자 시장

주요내용 주민자치기록의 수집 · 보존 · 관리 · 활용 · 전시 등 마을기록문화관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공공기록물 관리체계를 준용 한 주민자치기록물의 수집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등

2020년 마을기업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제 안 자 시장

주요내용 기관명 세종시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인력 5명(기관장 1명, 전담인력 2명, 파트인력 2명), 위탁비 150백만원(국비:시비=5:5)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원안가결)

제 안 자 시장

주요내용 수탁기간 변경 2017. 1. 1. ~ 2020. 6. 30.(3년6개월), 기존 민간위탁에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운영방식 변경(연장사유)

세종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제 안 자 시장

주요내용 시설 규모 대지 989.68㎡, 시설 494.84㎡(지상2층) 조치원읍, 운영재원 자체보조사업(시비100%), 인력규모 5명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제 안 자 시장

주요내용 광역치매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위치 세종시 조치원읍 수원지 1길 16, 연면적 342㎡, 인력 총 7명 (센터장1, 간호사2, 사회복지사2, 작업치료사1, 연구원1), 사업비 年 552,191천원(국비70% 시비30%)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제 안 자 이태환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감독관에게 감독관증을 발급하고 직무수행 시 감독관증을 제시하게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제 안 자 박성수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센터의 위탁 운영과 운영비 지원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7조),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및 안 제10조)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제 안 자 노종용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등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제 안 자 채평석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청년이 위촉위원의 1/10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의2 신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박성수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에 관해 규정함(안 제1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박성수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 개최 신설(안 제3조제4호)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박성수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센터장 외에 상근하여야 할 센터종사자는 최소 4명 이상으로 함(안 제4조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박성수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노인 일자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및 관련 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반영(안 제4조제3항, 안 제4조제4항 신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여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제고(안 제6조제4항) 등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수정가결)

제 안 자 박성수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여성장애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안 제5조) 등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이윤희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치료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등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시장

주요내용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령에 맞게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도시농업 기술의 보급 기능을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함(안 제6조) 등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김원식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및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대상 공사장 범위와 억제시설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안 제6조 및 제9조), (대상)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 최소 규모의 5배 이상 공사장(다만, 학교·종합병원 주변 등 공사장은 최소 규모 2배 이상 공사장으로 한다), (강화기준)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 배치,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는 등 기준 강화,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특정장비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이재현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대상 범위와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주차장 무료개방 사업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 등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이재현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조례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축산·수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곤충산업과 말산업을 축산·수산업 등에 포함하여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등

세종특별자치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제 안 자 차성호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등

세종특별자치시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차성호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소재·부품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소재·부품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등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제 안 자 이태환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세종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17조까지), 세종사랑상품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등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유철규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예정지역 내 블록형단독주택 특화 실현을 위해 맞벽건축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따르도록 함(안 제38조제4항) 등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제 안 자 이태환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시장이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경우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8조제5항 신설)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차성호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등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수정가결)

제 안 자 이재현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등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제 안 자 김원식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방범대 및 연합대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6조), 방범대 및 연합대 활동을 위하여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중단 및 축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등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상병헌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세종지방경찰청 개청 및 부대 명칭 변경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담당간사 변경(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및 제7조),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운영 중인 다른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 신설(안 제4조) 등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제 안 자 손현옥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등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제 안 자 윤형권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평화·통일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제 안 자 박용희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 준수사항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교육감은 정책 등의 명칭을 정할 경우 가능한 국어 바르게 쓰기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5조) 등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언어문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박용희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언어문화운동은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여 실시하도록 기본이념을 정함(안 제3조), 언어문화운동의 효과적인 전파와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언어문화운동 권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등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수정가결)

제 안 자 박용희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학교도서관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임채성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교육감이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거점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등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수정가결)

제 안 자 윤형권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안 제2조),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노동인권교육 시행 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원안가결)

제 안 자 상병현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령 기준에서는 시·도의 중앙심사 의뢰 기준 금액을 300억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부령은 10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 대부분의 교육시설 사업이 100억 원 이상 소요되어 중앙의뢰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4년간 전국 교육시설 사업에 대한 중앙의뢰 심사 통과율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통과되는 경우에도 수차례의 재심사를 거치므로 여러 가지 낭비요인과 사업 자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제도 정비의 촉구를 결의하고자 함.



그 외 처리 안건

시장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도시관리계획(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사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찬성의견)
-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초록우산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조치원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세종시장애인복지관(분관포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국산 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연구 출연 동의안(원안가결)

-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원안가결)
- 명학일반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현수막 지정계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제 6,7,8호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의 건(찬성의견)
-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의 건(찬성의견)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 인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 정예산안(수정가결)
-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원안가결)

교육감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별





입법 정보

56 생활법령-솔로몬의 선택

61 주요 입법동향

최근 공포 법령

최근 국회 접수 주요법안

최근 입법 예고 주요법령

66 법령 해석 사례

72 최근 시행 법령

74 타 지자체 제개정 자치법규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평소 자신이 버는 돈에 비해 쓴금
이가 컸던 허영씨~!

허영씨는 신용카드 대금을 갚을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 처럼 ◎◎카드사에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한도 1억원의 신용카드를 2017년 1월경 발급받은 후, 약 2년여 동안 200여회에 걸쳐 수천

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과소비로 인해 허영씨는 2018년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카드대금 8천만원 중 5천만원만 갚고 나머지 3천만원은 변제하지 못하여 카드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1. 카드회사 : 허영씨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궁색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 누적으로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 허영씨 : 누구나 일시적인 자금궁색 상황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는 거 아닌가요? 신용카드 발급이 적법했고 이후에 재산이 없어서 결제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한 도내에서 쓴 것인데, 사기라니요~ 말도 안 돼요~!!



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

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회원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어 신용카드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 결

정답은 “카드회사 : 허영씨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 누적으로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사기죄에 해당합니다.”입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행위를 말하는데(「형법」 347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

출처 - 법제처(생활법령)

②
생활법령
솔로몬의 선택

보증금 반환? 위약금 지급? 무엇이 먼저일까?



진고생씨는 좀 더 나은 노후를 보내기 위해 그간 열심히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상가 건물을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건물에는 당구장을 운영 중인 상가임차인인 나당당씨가 있었으나, 곧 임대차기간이 만료(2018. 6. 30.자)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습니다. 진고생씨는 1층 전체를 한 가게로 운영하고 싶다는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자 나당당씨에게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가게를 비워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전액(미납임차료, 원상복구비, 수도광열비, 기타 미납금 제외)을 반환받을 시 이전하며, 이전기한은 2018. 6. 31.까지로 한다. 임대인이 명도에 따른 이사비용 5,000,000원을 임차인에게 선지급하되, 임차인이 이전을 하지 않을 시 이사비용의 10배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에 합의한다”는 합의서를 2018. 5. 25.에 작성하였고, 진고생씨는 바로 이사비용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할 다른 가게를 구하지 못한 임차인인 나당당씨는 영업을 더 하고 싶으니 이사비용 5,000,000원을 반환하겠다면서 2018. 6. 30.까지 점포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진고생씨는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 위약금 50,000,000원과 추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나당당씨는 집기를 조금씩 반출하다가 결국 2018. 7. 말 경 점포를 비워 주었습니다.

나당당씨는 점포를 비워주었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진고생씨는 위약금 50,000,000원으로 인하여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다음 중 누구 말이 맞을까요?

1. 진고생씨: 나가기로 합의한 날짜에 나가지도 않고, 이사비만 꿀꺽했으니 당연히 위약금을 물어야지요, 그게 법 아닙니까? 보증금하고 위약금하고 같으니 전 돌려줄 돈이 없는 거구요.

2. 나당당씨: 내가 약속보다 1개월 후에 나간 건 인정해요, 그렇지

만 진고생씨도 합의한 날짜에 보증금을 준 적이 없으니 나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거라고요. 보증금 돌려주세요.

평 결

정답은 “나당당씨: 내가 약속보다 1개월 후에 나간 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진고생씨도 합의한 날짜에 보증금을 준 적이 없으니 나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거라고요. 보증금 돌려주세요.”입니다.

진고생씨는 합의에서 정한 위약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피고에게 지급할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어 소멸하였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을 뿐 피고에게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점포 인도의무와 원고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 중 나당당씨가 2018. 6. 30.까지 이전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은 이사비용의 10배를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 약정은 진고생씨가 나당당씨에게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는 등의 사유로 나당당씨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여 나당당씨의 점포에 대한 점유가 불법점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발생하는 의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24630, 224647 판결).

진고생씨가 나당당씨에게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하였거나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한 바 없으므로, 나당당씨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2018. 6. 30.까지 진고생씨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당당씨의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나당당씨는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나당당씨가 2018. 6. 30. 이전에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점포 인도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습니다.

출처 – 법제처(생활법령)

③
생활법령
슬로몬의 선택

해고무효로 복직한 노동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



○○아파트 관리소장인 나소장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징계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징계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절차는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나소장씨를 조속히 해고시키고자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해고 30일 전의 예고'를 하지 않은 채 해고한 후 나소장씨에게 270만원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소장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나소장씨의 구제신청을 받아 들여 해고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나소장씨는 다시 관리소장으로 복직하였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나소장씨에게 해고예고수당 반환을 요청하였는데요, 복직한 나소장씨는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나소장씨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으니, 해고예고수당 또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2. 나소장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 지급한 수당이므로 해고의 적법 여부나 효력 유무와 상관없이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평 결

정답은 "나소장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 지급한 수당이므로 해고의 적법 여부나 효력 유무와 상관없이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입니다.



유예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한 제도입니다. 해고가 무효인 경우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 비해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을 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예고제도를 통하여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 여부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해고예고제도 자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더욱 큽니다.

결과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적법한지나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므로, 본 건 사안의 경우 나소장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 법제처(생활법령)

음주운전으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을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포함할 수 있을까?



주마왕은 2008년 3월 12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15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했던 주마왕은 2017년 2월 2일 친구생일파티에 초대받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고, 같은 달 27일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이별의 아픔에 술을 곧

드레 만드레 마신 후,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경찰 나암행에게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게 됩니다. 2017년 2월 2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마왕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던 것입니다.

주마왕의 경우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2017년 2월 2일 음주위반 사실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1. 주애찬 : 2017년 2월 2일 음주운전에 관한 유죄판결이 나온것도 아니잖아. 주마왕에게 판결 전의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해 처벌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구!

2. 나금주 :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행위자체가 잘못이야. 당연히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포함해야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제148조의2제1항제1호는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는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즉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1항제1호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 11378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주마왕은 ① 2008년 3월 12일 ② 2017년 2월 2일 ③ 2017년 2월 27일 총 3회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처 - 법제처(생활법령)

정답은 "나금주: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행위자체가 잘못이야. 당연히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포함해야지!"입니다.

평 결

5
생활법령
슬로문의 선택

SNS에 뉴스 기사를 공유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나요?



사립학교의 교원인 김훈장은 짬짬이 SNS를 확인하면서 500명이 넘는 SNS 이웃들의 새 소식을 확인하는 것을 소소한 즐거움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훈장은 낮에 포털사이트에서 봄 두었던 국회의원 후보자 박 출세에 관한 비판적인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공유하기’를 한 후 전체공개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출세는 「공직선거법」에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훈장이 자신을 낙선 시키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김훈장은 자기의 SNS계정에 뉴스기사를 공유한 게 어떻게 낙선운동이냐며 항의 하였는데요. 단순히 뉴스기사를 SNS에 공유한 것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1. 박출세 : 500명 이상의 SNS친구가 있는 사람이, 심지어 ‘전체공개’로 나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공유하는 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낙선운동과 뭐가 다르단 말이요? 요즘 인터넷의 파급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거 알 만 한 사람이! 이건 명백한 낙선운동이에요!!
2. 김훈장 : 아니! 무슨 말이세요? 그냥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신문기사를 공유하기만 한

건데! 눈을 씹고 찾아보세요. 제가 쓴 글이 어디 있는지. 그냥 퍼 나르기 만 한 내용까지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는 건 무리 아닙니까?

평 결

정답은 “② 김훈장: 아니! 무슨 말이세요? 그냥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신문기사를 공유하기 만 한 건데! 눈을 씹고 찾아보세요. 제가 쓴 글이 어디 있는지. 그냥 퍼 나르기 만 한 내용까지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는 건 무리 아닙니까?”입니다.

본 건 사안은 SNS에 기사링크를 단순히 ‘공유’한 것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먼저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에서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의견 등을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은 채 단지 SNS에 기사를 공유한 것까지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타인의 페이스북 게시

물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는 ① ‘좋아요’ 버튼 누르기, ② 댓글 달기, ③ 공유하기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다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을 때는 ‘댓글 달기’ 기능을 이용하며, 게시물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 그런데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목적은 게시물에 나타난 의견에 찬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이 재미있거나 흥미롭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자료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을 당장 읽지 않고 나중에 읽어 볼 목적으로 일단 저장해두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등 상당히 다양하고, ‘공유하기’ 기능에는 정보확산의 측면과 단순 정보저장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아무런 글을 부기하지 않고 언론의 인터넷 기사를 단순히 1회 ‘공유하기’ 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다만, SNS상에 특정한 글을 작성하여 공유하거나, 링크한 신문 기사 내용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게재한 경우에는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고합480 판결).

출처 – 법제처(생활법령)

주요 입법동향

01

최근 공포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19. 8. 27 공포 /'19. 8. 27 시행/대통령령 제30050호)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식탄공사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02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9. 9. 10 공포 /'19. 9. 10 시행/대통령령 제30076호)

종전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한 임기제공무원을 동일 개방형 직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려면 해당 개방형 직위에서 임용기간이 5년에 도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용기간이 3년에 도달하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우수한 인력이 공직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임용에 대한 소속 장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 외부에서 적격자를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순위를 정하지 않고 임용후보자를 추천하면 소속 장관이 전문성이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0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19. 9. 10 공포 /'19. 9. 10 시행/대통령령 제30074호)

연구원, 학교 등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술사 및 박사학위 등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 비율이 높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해당 연도에 청년고용의무제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고용하는 비율이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서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조정하려는 것임.

04

고용보험법 시행령

('19. 9. 17 공포 /'19. 10. 1 시행/대통령령 제30083호)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557호, 2019. 8. 27.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05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19. 9. 24 공포 /'19. 9. 24 시행/대통령령 제30091호)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부마 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10월 16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주요 입법동향

01

최근 국회 접수 주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진복의원 등 10인)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을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에 근거없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그 구조가 지류형 상품권과 상이한 부분이 있고 펀테크 산업의 발전을 고려하여 그 규제에 있어서 유연성이 필요함.

이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

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3인)

최근 5년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 평가액은 총 5조 6,600억원이었음. 2018년 국민연금은 일본 전범기업 75곳에 1조 2,300억원을 투자했는데, 75개 종목 중 63개(84%) 전범기업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음. 일본 수출규제로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투자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

문제는 투자를 제한해야 할 일본 전범기업의 대상을 어떻게 정의해야 적절한가 하는 것임.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2010~2015)가 집계한 일본 전범기업 리스트가 있지만, 우리 정부가 공인한 리스트는 아니며 해당 기업 수가 적지 않아 그 기업 모두를 투자 제한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일본과의 추가적인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은 법원이 배상 판결을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일본 전범기업을 투자 제한 대상 기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이에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 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일본 전범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을 제외하도록 하여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102조제4항 후단 신설).

0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1인)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하도급법과 유통3법(대규모유통업법, 가맹점법, 대리점법) 등이 있음. 이러한 법률 중 갑이 을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하도급법이 유일함.

현행 유통3법에서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경제적 착취행위를 금지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는다고 해도 불공정한 계약사항의 민사적 효력까지 무력화되지는 않음. 민사적 효력을 무효화하려면, 소송을 통해서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받거나 약관법을 위배한 불공정한 약관으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함. 하지만, 불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입증증거 대부분을 확보하고 있어 피해를 본 사업자가 많은 시간과 돈을 쓴다 해도 승소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민법」이나 약관법을 적용하지 않고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간의 불공정한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주요 입법동향

04

최근 국회 접수 주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판매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청소년에 대한 제재는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청소년이 주류를 취식한 후 판매자를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의 경우 제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소속 학교의 장과 친권자등에게 통보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청소년이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는 등의 행위로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학교의 장에게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실시를 요청하고 해당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등이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가정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

05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관한 특별법안

(안규백의원 등 13인)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화성시(당시 화성군) 일대에서 10건의 살인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는데 당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으로, 2006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

최근 디엔에이 감식 기술의 발달 등으로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하는 등, 화성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임.

그러나 연인원 200만 명 이상의 경찰이 동원되고 3000명 가량이 조사를 받았으며 수많은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주었던 사건인 만큼,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공소시효 완성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중 용의자가 검거된 1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해서는 당시 발생한 살인 사건에 적용되었던 1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현 상황에서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0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함(안 제14조제4항).

참고사항 : 가.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1호),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4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2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1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주요 입법동향

01

최근 입법 예고 주요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19. 10. 14. 까지)

현행 계절근로 체류자격은 90일까지만 취업이 가능한 별표 1(단기체류자격) 단기취업(C-4) 체류자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농·어촌에서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어, 농·어촌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한 계절근로(E-8) 자격을 별표 1의2(장기체류자격)에 신설하려는 것임.

02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19. 10. 15. 까지)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유인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골자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임.

03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19. 10. 16. 까지)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촉이나 기관 임원의 채용 등에서 일률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령이나 정관 등에 해당 위촉·채용 등과 관련하여 적격자 추천이나 부적격자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능력이 부족한 자가 무분별하게 해당 직무를 수행할 우려가 없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의 직역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19. 11. 4. 까지)

난임치료휴가의 사전신청기한을 삭제하여 근로자가 보다 원활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돌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근속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비정규직 등의 근로자가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해당 개정안이 위임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 입법동향

05

최근 입법 예고 주요법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19. 11. 18. 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불법 투기·방치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신속한 불법 폐기물 처리를 도모하는 등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폐기물 처분부담금 감면대상 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06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19. 11. 19. 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창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업을 허가·등록하려는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위치하도록 허가·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환경과 조화된 축산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와 보수교육 주기를 단축하여 축산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16126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0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19. 11. 19. 까지)

현행 배출 전망치 감축목표 설정 방식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하여 안정되고 일관된 목표를 유지함으로써 국내 온실가스 감축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08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19. 11. 20. 까지)

2007년 우리나라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하면서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의 발급 관련 사무의 국내 이행규정을 외교부령, 법무부령, 외교부예규 등 여러 규정에 나누어 규율하고 있었던 바, 상기 규정을 하나의 대통령령으로 통합하는 동시에,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전자 아포스티유(e-Apostille) 논의 선발주자로서 시범 운영 중이던 전자적 아포스티유 처리 수단을 명문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령해석사례 ①

건축허가 등 절차에 경관위원회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19-0260 / 회신일자 2019. 8. 30.)

질의요지

2017년 2월 3일 전에 「경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이하 “경관위원회 심의”라 함)를 거쳤으나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각주: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상의 첫 절차인 경우를 전제함.)는 신청하지 않은 자를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7. 2. 3. 보건복지부령 제47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4조제3항제1호의 “건축허가 · 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허가 · 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의료법」 제36조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제1호)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4에서는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 관한 의료기관 시설규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입원 환자 등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은 규칙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원실 및 중환자실의 시설규격을 강화하면서,(각주: 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 · 치료시설 · 의료 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기득권이 성립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판단할 때는 개정 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의 절차 ·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에서는 직접 경관위원회 심의를 건축허가의 절차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등이 의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건축법」 상의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관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경관 심의 운영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4장제2

절에 따라 건축물의 배치, 규모, 형태, 입면, 외부공간계획 등 건축물의 외관과 관련된 심의를 통해 경관을 보전·관리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계획서, 평면도, 단면도, 구조도 등 구체적인 설계도서를 통해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기능을 판단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바, 경관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는 그 목적과 검토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구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의 의미를 경관위원회 심의까지만 받은 경우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경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관위원회 심의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절차이므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건축허가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규정은 경관위원회 심의 시기만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한정하여 볼 것이지 경관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사례 ②

청약철회등 기간에 대한 규정 중 “그 사실을 안 날”에서 “그 사실”的 의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19-0300 / 회신일자 2019. 8. 30.)

질의요지

소비자가 청약철회등(각주: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말하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5호 참조), 이하 같음.)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서 “그 사실”은 재화등(각주: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실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재화등의 공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그 사실”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제17조제3항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을 이유로 청약철회등을 할 객관적 또는 주관적 여지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각주: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례 참조) 공급받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을 알지 못한 상태였더라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받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법률관계의 안정이라는 두 가지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서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규정한 것은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을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른 것을 기준으로 청약철회등의 기간을 정한 것이고,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규정한 것은 공급받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을 현실적으로 알았거나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각주: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례 참조)를 기준으로 청약철회등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만약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서 “그 사실”을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아니라 재화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이라는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3개월 이내와 30일 이내라는 서로 다른 청약철회등의 기간을 규정한 것이 되어 상호 모순되는 규정이 될 뿐 아니라,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므로(각주: 법제처 2014. 7. 24. 회신 14-0404 해석례 참조) 사실상 소비자가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을 이유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재화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로 제한되어 소비자의 권리가 축소되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해석사례 ③

비법인단체가 사립유치원을 설립 ·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7조 등 관련)

(법제처-18-0793 / 회신일자 2019. 9. 6.)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립학교를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의하고 있고,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서는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 · 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법인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주체인 “사인”에 포함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비법인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주체인 “사인”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유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서는 사립학교 또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주체의 하나로 “사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인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사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 경영주체를 “법인 또는 사인”으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유치원 설립 · 경영 주체로서의 법인은 공적 법률관계에서 공인(公人)에 대응하는 사인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해당 규정에서 법인을 사인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립유치원 설립 · 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공인에 대응하는 자로서의 사인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립하는 법인에 대응하는 자로서 생존하는 동안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법」은 「초 · 중등교육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바,(각주: 2003. 12. 27. 의안번호 제163088호로 제출된 유아교육법안(대안) 제안이유 참조)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전의 구 「초 · 중등교육법」(각주: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 「초 · 중등교육법」을 말함.) 제3조에서는 사립학교의 설립 · 경영 주체를 “법인 또는 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초 · 중등교육법」에서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각주: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참조) “사인”이라는 용어가 “개인”이라는 용어로 정비되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에서는 사립학교경영자를 「유아교육법」의 구분과 같이 법인과 사인으로 구분하면서(제2조제3호) 사립학교경영자를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와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로 구분하고 있고(제70조의2제1항), 「사립학교법」 위반에 따른 형벌의 부과 대상을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로 규정하여(제73조 및 제73조의 2) 비법인단체가 「사립학교법」 위반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립유치원의 설립 · 운영 및 폐쇄와 관련하여 사인이 학교설립계획서 또는 학교설립 인가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신청인에 대한 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제2호)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사립유치원의 설립 · 운영 주체로서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규정된 “사인”은 자연인일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사립학교는 국 · 공립학교와 설립주체가 다를 뿐 교직원, 교과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등에 있어서 동일하여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 · 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각주: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바14 결정례 참조) 사립학교 설립 · 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 · 설비 · 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 · 관리해야 하는 책무(「교육기본법」 제16조제1항)를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립유치원 설립주체인 사인은 유치원의 다른 설립주체들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 가지는 능력과 지위가 같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과 지위를 갖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법」 등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능력 등이 인정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과 달리 비법인단체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지 여부 등 판례를 통해 축적된 요건들(각주: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례 참조)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불완전한 지위에 있고, 비법인단체가 비법인사단 등에 해당할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등에 대한 등기를 하거나(「부동산등기법」 제26조제1항), 비법인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더라도(「민사소송법」 제52조) 이러한 규정만으로 비법인단체에 대하여 당연히 사법상의 권리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할 수 없는 점(각주: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211 판결례 참조) 등을 고려할 때 비법인단체가 비법인사단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인이나 법인과 같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법인단체는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규정된 “사인”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법령해석사례 ④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기록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법제처-19-0277 / 회신일자 2019. 9. 17.)

질의요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면서 「의료법」상 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기록한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함)을 보존할 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정한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을 따라야 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이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인 지방의료원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면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각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에 해당하므로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생산·접수한 진료에 관한 기록은 공공기록물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이면서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하는바, 공공기록물법 제8조에서는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료원의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 법령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법령상 진료기록부등의 보존에 관한 규정이 공공기록물법령상 기록물의 보존에 관한 규정에 대한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록물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생산·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에 대해 적용되는(제2조 및 제3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일반법으로(제8조),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 기준에 관해 같은 법 제19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 기준을 둔 취지는 기록물의 보존가치에 따라 일정한 기록물 관리기준을 마련해 기록물의 보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각주: 2007. 4. 4. 대통령령 제19985호로 전부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 참조) 공공기록물법령에서는 해당 기준에 따른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기록물법 제19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단서 및 제26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은 단위과제별로 책정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정할 때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 공공기관의 장이 정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료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공기록물법상 기록물의 보존가치 및 장기보존 필요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지방의료원의 장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반면 「의료법」은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제1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제22조제2항), 특히 진료기록부, 처방전, 수술기록과 같은 일부 특정 기록들의 보존기간을 열거규정으로 정하면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90조)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록의 보존·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사유(제86조의3)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기록부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어 가장 엄밀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각주: 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어 2012. 4. 8. 시행된 「의료법」 개정이유 및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어 2010. 1. 31. 시행된 「의료법」 주요내용 참조)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자체 없이 파기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료기록부등이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생산·접수한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민간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생산·접수한 진료기록부등과 보유기간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료법령상 진료기록부등의 보존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록물법령상 기록물의 보존에 관한 규정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의료원은 「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최근 시행 법령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0월 1일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 및 분할 사용 횟수 등을 개편하여 근로자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 되는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 돌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②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0월 1일 시행

외환위기 이후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지원수준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아직도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까다로운 수급조건,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완화하고, 구직급여일액을 상향하며,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는 등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한편,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또는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바, 10년 동안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요건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③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10월 8일 시행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해당 결혼이민자 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의 출신 국가의 역사·전통·문화·언어,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기본 소양 또는 결혼이민자 등의 출신 국가의 체험 사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정보지와 시청각 자료 등을 발간·배포하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월 17일 시행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또는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과 아울러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의 취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월 17일 시행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고,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등을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종별로 수입·반입·방출·방제 등에 관한 관리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기 위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10월 24일 시행

교통약자의 철도·항공기 등 탑승 시 편의를 제고하고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객실승무원, 여객승무원 등에게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에게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도록 하는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10월 24일 시행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이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874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이 각각 100만원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의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병원과 한방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면서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40으로, 3인실의 경우 100분의 30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타자체 재개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시행 2019. 9. 26.]

제안이유

- 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문화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으며, 지역문화의 선두이자 대한민국 문화수도로서 서울을 가꾸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음.
나. 이 조례안은 문화서울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문화 융성을 위한 첨단으로서 지역출판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을 추진함.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지역출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를 지원·육성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나. 지역출판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지역출판심의위원회를 두어 진흥계획, 정책 등을 심의함(제5조부터 제6조).
다. 시장이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제정) 2019-9-26 조례 제 733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지역출판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지역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두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제4조(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 상황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추진체계
 3.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주요시책
 4. 지역출판 진흥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지역출판의 진흥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과장 이상의 공무원
2.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 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개발과 자문에 관한 사항
3. 지역출판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역출판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사업
 2. 양서(良書) 출판의 장려·지원 사업
 3.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참가 및 홍보 지원 사업
 4. 출판시설 및 간행물 유통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 관련 사업
 5. 전자출판사업의 육성·지원 사업
 6. 서울특별시 관련 우수 출판물의 제작 및 배포 사업
 7.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마케팅, 우수 출판물 배포 등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
 8. 지역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지역출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7332호, 2019. 9. 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9. 26.]

제안이유

서울시 비문해 성인들의 문자해득능력 및 서울생활에 요구되는 기초생활능력 함양을 위하여 성인 문해교육 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 나. 문해교육이 지향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함(제4조)
- 다.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을 규정함(제5조)
- 라.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함(제6조)
- 마. 서울특별시문해교육센터 지정·운영을 규정함(제7조)
- 바. 문해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규정함(제9조)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9- 26 조례 제 734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비문해 서울시민이 문자해득능력과 기초생활능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갖추지 못한 만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성인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이주 등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비문해자 성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나이,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③ 문해교육은 대상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에게 문해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문해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해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해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3.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해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
6. 문해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서울특별시문해교육센터) ① 시장은 문해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둔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 시설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지원
2.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 보급 및 지원
3. 문해교육 교원 양성 · 연수 및 역량강화
4.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업무
5. 문해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자치구 및 민간단체 등과 긴밀하게 교류 · 협력한다.

제9조(문해교육기관 지원 등) ① 시장은 자치구 및 문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제7340호, 2019.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9. 25.]

제안이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조례에 사용되는 돌봄아동, 마을돌봄, 마을돌봄시설, 마을돌보미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 나.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시의 책무를 정함(제3조)
- 다.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 ·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함(제5조)
- 라. 돌봄 지원 사업의 범위와 이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6조)
- 마. 마을돌보미의 돌봄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돌봄시설의 설치와 지도 · 점검, 안전사고 예방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바. 돌봄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마을돌봄협의회의 설치 ·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 사. 돌봄 지원 사업의 추진실적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함(제22조)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9-25 조례 제 599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마을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 양육, 교육 · 문화 · 예술 · 체육 등의 프로그램, 맞춤형 정보 · 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마을돌보미"란 돌봄시설에서 돌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시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돌봄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돌봄 정책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돌봄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
 6.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돌봄의 현황·실태 및 수요와 공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돌봄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
 2.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다함께돌봄 사업
 3.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
 4.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
 5. 그 밖에 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구·군,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마을돌보미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돌봄시설에서 마을돌보미를 위촉하여 돌봄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돌보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점검)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사고 예방) ① 시장은 돌봄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돌봄시설 이용 아동, 돌봄시설 종사자, 마을돌보미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돌봄시설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마을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마을돌보미 확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돌봄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담당 공무원
2. 부산광역시교육청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구·군, 초등학교 등 유관 기관 관계자
5. 돌봄시설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돌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2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 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시의회 보고) 시장은 돌봄 지원 사업의 추진실적을 매년 상반기 부산

광역시의회 업무보고 시 부산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의 존속기한)

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마을돌봄협의회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시행 2019. 9. 25.]

제안이유

가속화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로 유발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과 대구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함.

주요내용

- 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 나.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 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다. 행복지표를 개발 · 보급하고,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시민의 행복 실태조사 및 행복 격차를 포함,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0조).
- 라. 행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행복위원회'를 설치도록 하고, 그 기능에 관해 규정함(안 제11조).
- 마. 행복영향평가, 예산 운영, 행복 증진 교육,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정) 2019- 8- 12 조례 제 530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쾌적한 삶을 증진시키고 대구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등 가스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3. “기후변화대응”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경제·환경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및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5. “온실가스의 감축”이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거나 대기로부터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과정·활동 또는 체계를 말한다.
6. “온실가스의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해 대기로부터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7.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억제 및 흡수 증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변화와 온실가스 배출저감 교육을 통하여 기후변화대응 시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지식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후변화대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가 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시책의 종합적인 계획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2.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
3.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부문별 추진사항
4.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국내여건 변화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④ 시장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민·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제6조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

제8조(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① 시장은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을 위해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 및 실적 작성 등) ① 시장은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할 때에는 재정적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기본 정보(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주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지 주소)
 2.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등
 3.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감축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원을 받은 자는 매년 감축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산림사업으로 탄소흡수원 확충)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도심 내 녹지 확충과 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탄소 흡수원이 증대되도록 녹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자동차의 사용억제 등) ①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억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차 없는 날과 자동차 운행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제13조(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편의시설 확충, 전용차로 운영 확대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월 일정한 날짜를 “대중 교통의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친환경운전과 친환경교통수단 이용 확산) 시장은 친환경운전과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등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조치

제15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장래의 다양한 환경현상으로부터 시민의 인적·물적 피해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후변화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기후변화영향 조사체계 구축)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의 변화상황과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영향 조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시장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기후변화 취약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원 등

제1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후변화관련 연구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구
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시책 개발
3. 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한 사업개발
4. 기후변화대응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교육

5.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구·군의 기후변화대응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시민·사업자·단체·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실천활동, 해외조림·사막화 방지 등 국제협력사업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대구기후변화연구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및 지역환경개선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기후변화연구센터(이하 “대구기후변화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대구기후변화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후변화대응·적응관련 시책 개발 및 연구
2.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등 정책개발 지원
3. 환경관련 산업체 온실가스 감축 및 해외진출 컨설팅
4. 기후변화 관련 국제·국내 포럼 및 세미나, 국제회의 개최
5.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홍보
6. 대기, 물, 폐기물, 자연생태 등 지역환경문제 해결방안 연구
7.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및 지역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

제2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의 교류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조례 제5308호, 2019.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시행 2019. 9. 23.]

제안이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및 제36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함.(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마.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바.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인천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제정) 2019-9-23 조례 제 623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및 제36조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희생자 추모를 통한 인간 존엄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 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치유와 회복,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의식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계획(이하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
 3. 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
 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 · 시행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하여 필요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라 선정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2019-09-23 조례 제6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2. 27.]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 제4조)
- 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사업 및 신분보장(안 제5조, 제6조)
- 라.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안 제7조)
- 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 운영(안 제8조)
- 바. 시행규칙(안 제9조)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2019-9-26 조례 제 200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관내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요양세부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세부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 ② 시장은 장기요양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처우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처우개선사업)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이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
5.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6.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 · 폭행 · 성희롱 ·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요원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 · 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 운영) ① 시장은 처우개선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 해소 등 건강증진
 3. 장기요양요원의 창업 상담 및 정보 제공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8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0. 11]

제안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 시행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4조)
- 보칙(안 제15조 ~ 제19조)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0- 11 조례 제 160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들을 보호 ·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6.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7.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익신고 상담과 접수 및 처리
2.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3.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4.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 · 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3장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설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장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

제11조(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6.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 ② 제1항에 의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우수기업 대상 지방세 감면 등) ① 시장은 우수기업 대상으로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기타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시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5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시장은 감사업무 부서장을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16조(민간협력)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17조(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8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2019. 10. 11. 조례 제1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시민은 '어른다운 시민'이 되자



친구가 상을 당해 세 가족이 모여 3대의 승용차에 나눠 타고 청양으로 문상을 다녀오던 길이었다. 지방 국도를 따라 운전하던 중 산길에서 화물차 한 대가 우리 차 앞에서 거북이 걸음을 하며 힘겹게 오르고 있었다. 추월금지 구역이었다.

마침내 우리와 함께 출발한 다른 가족 차가 갈지자 운전을 하며 기회를 엿보더니 잽싸게 화물차를 추월해갔고 두 번째 차도 중앙선을 넘어 잘 비켜 올랐다.

혼자 남게 된 나도 거기에 질세라 찬스가 생기자마자 가속 페달을 밟아 쑨살같이 트력을 추월했다. 그런데 커브 길을 막 돌아 나오자마자 교통 경찰관이 차를 세웠다. 앞서 갔던 친구 중 첫 번째 추월한 녀석도 붙잡혀 있었다. 그 친구 잡느라 두 번째 추월한 친구는 못 본 듯했다.

경찰은 가수경례를 한 후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며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할 말이 없었다. 차 안에 타고 있던 가족 앞에서 체면이 영 아니었다. 사실 그다지 급한 일도 아니었기에 ‘조금만 참고 천천히 달릴 걸’ 하는 후회도 들었다.

이런 때는 평소 집안에서 항상 근엄하게 옮겨만 보이려고 큰 소리를 쳐온 ‘아비’로서 아이들에게 위선자로 전락한 느낌이었다. 참으로 부끄러운 순간이었다.

“예, 조금 급히 가다 보니 위반을 했네요. 미안하게 되었는데 한 번 봐줄 수는 없습니까?”라고 말하자 경찰관은 환하게 웃으며 “네, 저도 봐드리고 싶지만 죄송합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어른다우십니다. 다른 차주들은

‘왜 나만 잡나’고 따지고, ‘속도 몇 키로 위반한 걸 가지고 딱지를 떼나’고 큰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위반을 솔직히 시인하시니 어른다우십니다. 바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자녀분들 앞에서 멋지십니다”라며 보기 좋게(?) 스티커를 발부했다.

환한 웃음을 지으며 위반 사실을 알리고, “차라리 이렇게 잘못을 인정 할 줄 아는 모습이 당당하고 멋지다”고 말해주는 경찰관 덕분인지 나도 그리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그는 내가 첫마디에 위반 사실을 시인해준 것에 무척 감동을 했고, 먼저 걸려든 수많은 사람들의 변명과 반발, 어른답지 못한 행동, 잘못을 인정 할 줄 모르는 위선에 대해 마음이 크게 상해 있었던 듯했다.

경찰관도 각양각색의 운전자들을 상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새삼 교통경찰관의 애로를 느끼게 됐는데 그는 나의 솔직한 시인에 정말 봐드리고 싶다고까지 했다.

가족 전체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므로 안전운전 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는 경찰관을 보며 나 스스로 반성도 했고, 고마운 생각도 갖게 되었다.

차 안에 타고 있던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아버지로 비쳐졌을까? 그날 아버지란 이름, 어른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가을 정취, 그 한가운데 서다

가을을 맞아 나무마다 물든 단풍이 절경을 이룬다.
색색이 화려한 단풍나무를 감상하다 보면 가을 정취의 중심에 서게 된다.
가을 풍경을 따라 감성과 낭만을 채우는 '가장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자.



밀마루전망대

세종시 중심행정타운에 지난 2009년 조성된 높이 42m에 달하는 전망대로 전 방위에서 도시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전망대에 오르면 세종시 도심 전경은 물론, 조치원과 공주 등 인근 지역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연중 무휴이며 설날과 추석 당일에는 전화로 휴무를 확인해야 한다. 입장료는 무료.

◎ 운영시간 9~18시 ◎ 위치 도움3로 58 문의 044.862.8845



산림자원연구소

중부권을 대표하는 산림휴양 문화공간으로 금강수목원과 산림박물관, 열대온실, 야생동물 사육장으로 이뤄져 있다. 이곳에는 전체 61.5ha 규모로 총 25개의 작은 정원이 조성돼 있으며 100여만본 이상의 산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관람료는 일반 1,500원, 청소년 1,300원, 어린이 700원이며 30인 이상 단체의 경우 200원 할인된다.

◎ 운영시간 9~18시(3~10월) 9~17시(11~2월)

◎ 위치 금남면 산림박물관길 문의 041.635.7400



민락정(民樂亭)

고복저수지의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정자로 '아는 사람만 안다'는 숨은 명소다. 정자 앞에는 향약의 4가지 덕목이 새겨진 향약비를 볼 수 있다. 민락정 인근에는 호수변 데크길과 야외조각공원 등이 조성돼 있어 가족 단위 산책 코스로 제격이다.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고복리, 용암리



국립세종도서관

2013년 12월에 개관한 국내 첫 정책 전문도서관이다. 건물의 외관은 거대한 책을 펼쳐놓은 듯한 형상으로 한눈에 봐도 도서관을 연상케 한다. 이곳에는 지상 1~4층, 지하 1~2층 규모로 각종 도서 자료실은 물론, 강의실과 회의실 등이 있다. 현재 60만여 점에 달하는 도서 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다. 매월 둘째와 넷째 주 월요일 휴관.

◎ 운영시간 9~21시(일부 자료실 18시까지)

◎ 위치 다솜3로 48(어진동 637) ☎ 문의 044.900.9114



운주산

세종시 전동면과 전의면의 경계에 위치한 높이 460m에 이르는 산이다. 산세가 완만한 편이며 단풍이 아름다워 가을이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정상부에는 백제 때 쌓은 운주산성과 고찰인 비암사(碑巖寺)가 있다. 특히 운주산성의 총 길이는 3,098m에 달한다.

◎ 위치 전동면 청소리 산 90

NEWS PAPER

충청신문



▲ 2019.08.07_총합 04면 [충청신문]

大田日報

세종시의회 임시회 폐회… 추경 등 73건 의결

세종시의회 제57회 임시회가 10일 폐회했다. 지난 달 27일부터 15일 간 기금운용변경예산안, 조례안, 동의안의 회기일정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 등이 이뤄졌다.

또 제2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7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세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2건이 심사·보고됐다. 이어 박성수·채평석·안천영·김원식·이태환 의원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임용우 기자 (16.9×3.6)cm

▲ 2019.09.11_정치 04면 [대전일보]

2019년 08월 07일
04면 (총합)

대전투데이



“국회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조치 나서야”

세종시민단체·정치권 후속조치 촉구 성명서 발표

세종시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총장수도완성과 국기권행방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 대표 김준식·정경이, 이하 지방분권 세종회의, 세종특별자치시 회의 총장수도완성특별위원회 원장 윤평권, 이하 총장수도특위는 22일 연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확정하고 설계 용역 등 의 후속조치를 국회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세종시의회 행정수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박용희 부위원장, 송인수·송원욱·최평석 의원이 참석했으며, 지방분권세종회의에서는 김수현 특별교체위원장, 허석희 문

영위원장, 차정님 미디어홍보위원장, 원장, 백종국 청와대위원장, 이해희 기획위원장, 유순희 교육위원장, 장래원 참여위원회가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세종당시에 임주한 정부부처와 관련된 상임 위원회를 비롯해 예전위, 예산정책위, 협력조사위, 서무처 일부가 이전하는 용역 결과에 따른 설계비 등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돼야한다고 입장을 모았다.

또한, 이들은 이전 규모와 함께 이전 시기도 명확하게 해단하고 촉구했다.

윤영권 행정수도특위원장은

(15.6×21.0)cm

▲ 2019.08.23_총합 01면 [대전투데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일반부가 국가균형발전의 보데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후속조치를 연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설치가 서울과 세종의 정치 이원화로 인한 행정·정치의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유익한 행보이다”며 “20 대 국회가 마지막 일기에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민 국회 사무처는 지난 8월 13일 「언부호장을 통해 재단원 위한 국회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에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16년 6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회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밝힌 원안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된 것이다.

김태선 기자

동양일보



세종시의회는 16일 오전 10시 시의회 3층 의정실에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영권, 이하 행수특위)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자문단 위촉식 개최

행정수도업무 관련 전문가 11명

세종시의회는 16일 오전 10시 시의회 3층 의정실에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영권, 이하 행수특위)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은 행정수도 업무와 관련해 학식과 경험에 풍부한 전문가들로, 김중규(세종의소리 대표), 문인수(전 화순군 부군수), 손영희(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 안용준(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이민기(공주대 교수), 이상진(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임기수(한국전통문화대 교수), 임봉철(한국농촌지도자 세종시 연합회장), 임승달(전 강릉대총장), 정연숙(매거진세종 대표), 최정수(한국영상대 교수) 등 총 11명이다.

자문위원 임기는 올해 말까지로, 자문위원들은 행정수도완성 추진방향

및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금택 의장은 위촉식에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오늘 위촉되신 자문위원들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행수특위 윤영권 위원장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시·의회, 집행부, 시민단체 및 자문위원 등 각계각층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지방분권세종회의(舊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 세종시청 실무지원단 등이 참석한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간담회가 위촉식에 연이어 진행됐다.

행정수도완성추진단 간담회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용역 결과에 대한 양후 대책 등을 논의했으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종 신세희 기자

(11.7×17.0)cm

▲ 2019.08.19_지역 07면 [동양일보]

동양일보



세종시의회 1기 의정모니터간담회

세종시의회는 26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1기 의정모니터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서금택 의장, 이영세 제2부 의장을 비롯 의정모니터 요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세종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의정모니터단은 시·의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보다 나은 제안자 역할을 수행 중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의정모니터링 현황과 성과, 의회와 의정모니터 간 역할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으며, 세종시 발전을 위한 의정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종 신세희 기자

(5.4×11.4)cm

충도일보

세종시의회 오늘 임시회 개회

세종시의회는 2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5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서금택 의장은 “국회시사무처에서 발표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세종시의회와 시·집행부는 국회에서 연내 설계비 집행 및 이전시기, 규모 등 건립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정치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은 다음달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일정으로 제57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세종=오희룡 기자

(5.6×10.1)cm

▲ 2019.08.27_지역 10A [충도일보]

▲ 2019.08.27_지역 07면 [동양일보]

충청신문

2019년 08월 28일
04면 (종합)

NH-Amundi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행사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이 27일 NH농협 세종점에서 부품과 소재 등 국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했다. 필승코리아 펀드는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최근 사회 저명인 사들의 가입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필승코리아 펀드 운용에 따른 보수(0.5%)의 50%는 국내 기술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된다.

세종=임규모 기자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11.2×9.4)cm

▲ 2019.08.28_종합 04면 [충청신문]

서울일보**세종시의회, 명학·전의 산단 환경개선 간담회****입주기업 다양한 애로사항 청취-해결방안 모색**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가 13일 최근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현장에서 관내 입주기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인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명학 산업단지와 전의산업단지를 차례로 방문하여 입주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차성호 위원장을 비롯한 김원식·유철규·손인수 의원과 명학·전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임원진,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

된 명학산단 입주기업체와의 간담회에서는 기반시설 교체비용 지원과 전광판 설치 등 환경 개선 요청이 있었으며, 이어진 전의산단 입주기업체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내 도로연결과 보강도로변 위험시설 안전관리 등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기업체협의회 임원진들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이래, 시의회가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소통의 시간을 갖은 것이 처음이라며 시의회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최석우기자
(11.0×8.6)cm

▲ 2019.08.16_지역 03면 [서울일보]

동양일보**세종 '농축산 선진화 모임' 홍성군 방문**

세종시의회 '농·축산업 선진화 연구모임'은 '세종시 축산 악취저감 T/F'와 합동으로 29일 세종시 축산 악취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충남 홍성군과 세종시 부강면 축산농장을 현장방문 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이재현 대표의원, 채평석 의원, 차성호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및 축산 악취저감 T/F 회원 등 14명과 관계공무원 7명이 참석했다.

충남 홍성군 장곡면에 위치한 오성농장을 찾아 양돈 악취저감을 위한 액비순환시스템 운영 우수 사례를 견학했다.

세종시는 지난 5월 농식품부 공모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오는 2020년 말까지 관내 양돈농가 17개소에 액비순환시스템, 밀폐발효기, ICT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세종 신서희 기자
(11.1×6.7)cm

▲ 2019.07.31_종합 05면 [동양일보]

금강일보**서금택 세종시의장 전국시·도의장협회 부회장 선출**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이 최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 정기회에서 제16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서 의장은 향후 1년간 서울시의회 의장인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 제16대

후반기 임원진과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와 지방의회 간 활발한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임원진 구성에서 충청권역을 대표해 부회장으로 선출된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뿐 아니라,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장이 사무총장으로 선출돼 눈길을 끌었다.

세종=서종권 기자
(14.1×5.2)cm

▲ 2019.08.26_지역 12면 [금강일보]

중도일보

세종시의회 '청소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손현옥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시에 청개구리 연못을 방문해 청소년 자유공간 운영을 현지마킹했다.

세종시의회, 수원 청소년 공간 견학

'청소년정책 활성화 연구모임'
경기 수원 청개구리 연못 방문

세종시의회 '청소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손현옥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시의 청개구리 연못을 방문해 청소년 자유공간 운영을 현지마킹했다.

올 상반기 세종시내 초·중·고 21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활동 장소로 66.7%가 집이라고 응답했으며, 활동장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49.4%를 차지하는 등 세종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에 위치한 청개구리 연못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휴식 및 소통 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수원시청 청소년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손현옥 박용희 의원을 비롯해 조주완(세종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 강경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연구모임 회원 4명과 황선희(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청년담당) 정상희(세종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청소년담당 장학사) 등 관계공무원까지 시의원·전문가·유관부서가 함께 했다.

(11.6×25.5)cm

▲ 2019.08.16_지역 05A [중도일보]

지역과 당파 초월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열망 한자리에



지난 9월 2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국회 세종의사당 심포지엄에서는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들뿐 아니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이어져 행정부 뿐 아니라 입법부의 기능과 역할 또한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방분권형 구조로 재정립되길 희망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옥고(玉稿)를 기다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식지 <세종의회소식>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옥고(玉稿)를 기다립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나 감동적인 사연, 시의회 방청 및 방문을 통해 느낀점, 의회에 바라는 글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실겠습니다.

- ※ 증명사진 및 관련사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 ※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 (담당자 박천국)
| 전화 | 044.300.7248 | 팩스 | 044.300.7219 | 이메일 | havnpark@korea.kr



QR코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터넷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④ 인터넷방송 보러가기 counciltv.sejong.go.kr



통권 제23호
표지제목 풍성한 가을 잔치

발 행 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홍보기획담당)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전 화 044-300-7000
홈페이지 <http://council.sejong.go.kr>



정치의 심장 어디든 더 가깝게 있겠습니다.

국토의 중심이자
행정의 중심인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건립을
촉구합니다!

